

#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국 민 권 의 위 원 회

##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875호

의 안 명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23. 11. 6.

## 주 문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1월 6일

위원장 김 홍 일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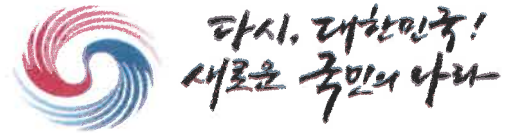
위 원 홍 봉 주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2023. 11.

# 목 차

|                                       |    |
|---------------------------------------|----|
| I. 추진배경 .....                         | 1  |
| II. 민원분석 .....                        | 2  |
| III. 일반현황 .....                       | 6  |
| IV. 문제점 분석 .....                      | 16 |
| 1.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방치 ..... | 16 |
| 2. 체납보험료 징수시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관행 .....  | 19 |
| 3. 건강보험(의무가입)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취지 훼손 ..... | 31 |
| 4. 저소득층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취소율 과다 .....    | 37 |
| 5. 납부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근거규정 미비 .....  | 41 |
| 6.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협소 .....     | 44 |
| 7. 납부의무자에 대한 각종 중요정보 제공방식 미비 .....    | 47 |
| V. 개선방안 .....                         | 55 |
| VI. 조치사항 .....                        | 71 |

- [붙임] 1. 저소득·취약계층 등의 건강보험 체납 관련 국회 입법 동향  
 2. 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공개토론회 토론 요약

## I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高물가·高금리·高환율 등 '3高' 위기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휴·폐업으로 내몰리는 상황

※ '22년 한해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1%, 이 비중은 196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추이 : ('18) 5,462억 → ('20) 7,283억 → ('22) 9,682억

- 직장 휴·폐업, 사업부진 등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체납 관련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적극 검토**

※ '코로나 실직' 및 임금삭감 현황('22년 4월)

- ▶ '20년 1월 이후 실직 경험 비율 : 정규직 7.7%, 비정규직 31.4% 약 4.1배 차이 발생
- ▶ '20년 1월 비교 소득 감소 비율 : 정규직 16.8%, 비정규직 57.0% 약 3.4배 차이 발생

※ '22년 7월, 건보료 체납현황(연소득 100만원 이하) : 세대수 64만8,478세대 / 체납액 9,073억4,526만원

※ 5년간('17~'21) 건보료 결손처분액 규모 : 119만5,219건 / 1조4,695억원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관련 빈발민원의 이유를 분석, 저소득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 필요**

'수원 세모녀' 빚고통에도...건보료 탕감은 '높은 벽'이었다. ['22.8월 한겨레신문]

- 숨지기 직전 18개월 동안 소득이 없었으나, 갚으라는 빚 독촉을 피해 거주지를 옮겨 다닐 만큼의 빚이 있음에도 매달 1만8,610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있었음
- 현재, '건강보험 결손처분'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사회안전망 밖에서 그림자 취약층으로 살아왔음

## II 민원분석

### 가. 고충민원 상정안건

- 최근 5년간('18.1월~'22.12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건강보험공단) 소위 상정안건 분석 : **817건**

※ 민원 추이 : ('18) 62건 → ('19) 129건 → ('20) 237건 → ('21) **247건** → ('22) 142건

<최근 5년간('18~'22)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체납 관련 반복민원 처리현황>

| 유형<br>건수 | 재산압류<br>·<br>압류해제 | 체납징수<br>분할납부<br>결손처분 | 급여제한<br>부당이득<br>환수 등 | 자격변동<br>관련 | 감면<br>(감액)<br>신청 | 사후환급<br>연대납부<br>의무 등 | 기타<br>(부과이의<br>등) |
|----------|-------------------|----------------------|----------------------|------------|------------------|----------------------|-------------------|
| 817건     | <b>185건</b>       | 60건                  | 37건                  | 21건        | 30건              | 41건                  | 443               |
| 100%     | <b>22.64%</b>     | 7.34%                | 4.53%                | 2.57%      | 3.67%            | 5.02%                | 54.23%            |

- 전체 고충민원 소위안건(817건) 중 **이송·이첩 34.3%, 합의해결 30.6% 순**으로 약 65% 차지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반복민원 유형별 안건처리 결과 현황>

(단위 : %)

| 유형<br>처리                            | 계           | 재산압류<br>압류해제 | 체납징수<br>분할납부<br>결손처분 | 급여제한<br>부당이득<br>환수 | 자격<br>변동<br>관련 | 감면<br>(감액)<br>신청 | 사후환급<br>연대납부<br>의무 등 | 기타<br>(부과이의<br>등) |
|-------------------------------------|-------------|--------------|----------------------|--------------------|----------------|------------------|----------------------|-------------------|
| <b>합의해결</b>                         | <b>30.6</b> | <b>64.86</b> | <b>30.0</b>          | <b>10.81</b>       | <b>33.33</b>   | <b>23.33</b>     | <b>24.39</b>         | <b>18.96</b>      |
| 심의안내                                | 22.4        | 16.76        | 30.0                 | 35.14              | 23.81          | 33.33            | 17.07                | 22.35             |
| 이첩·이송                               | 34.3        | 14.05        | 26.7                 | 24.32              | 19.04          | 23.33            | 26.83                | 46.73             |
| 기 각                                 | 1.1         | -            | -                    | -                  | -              | 3.33             | 7.32                 | 1.13              |
| 각 하                                 | 2.3         | 0.54         | -                    | 18.92              | -              | 6.67             | 2.44                 | 1.81              |
| 총 결                                 | 4.3         | 1.62         | 5.0                  | -                  | 4.76           | 3.33             | 4.88                 | 5.64              |
| 시정권고<br>·<br>제도개선<br>의견표명           | 1.7         | 0.54         | -                    | 2.70               | 9.52           | 6.67             | 2.44                 | 1.58              |
| <b>의견표명<br/>·<br/>제도개선<br/>의견표명</b> | <b>3.3</b>  | <b>1.62</b>  | <b>8.3</b>           | <b>8.11</b>        | <b>9.52</b>    | <b>-</b>         | <b>14.63</b>         | <b>1.81</b>       |

## 나.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 최근 5년간('18.1월~'22.12월) 국민신문고 일반민원(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대상민원 분석 : **117,721건**

※ 민원 추이 : ('18) 6,923건 → ('19) 4,701건 → ('20) 8,295건 → ('21) **91,065건** → ('22) 6,737건

- 지역별 민원 발생건수 확인결과, **서울(27,567건), 경기(27,331건), 전남(12,372건)** 순이며, **전체 민원의 57.2%** 차지

<최근 5년간('18~'22) 국민신문고 건강보험료 관련 지역별 민원건수 현황>

(단위 : %)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 건수 | 117,721       | <b>27,567</b> | 5,902 | 5,921 | 6,371 | 2,741         | 5,706 | 2,539 | 888   |
| 비율 | 100.0         | <b>23.42</b>  | 5.01  | 5.03  | 5.41  | 2.33          | 4.85  | 2.16  | 0.75  |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건수 | <b>27,331</b> | 2,622         | 2,334 | 3,452 | 2,132 | <b>12,372</b> | 3,428 | 5,357 | 1,057 |
| 비율 | <b>23.22</b>  | 2.23          | 1.98  | 2.93  | 1.81  | <b>10.51</b>  | 2.91  | 4.55  | 0.90  |

- 연령별로는 **50대(33,443건), 30대(29,159건), 40대(25,225건)** 순이며  
전체 민원의 **74.6%(87,827건)**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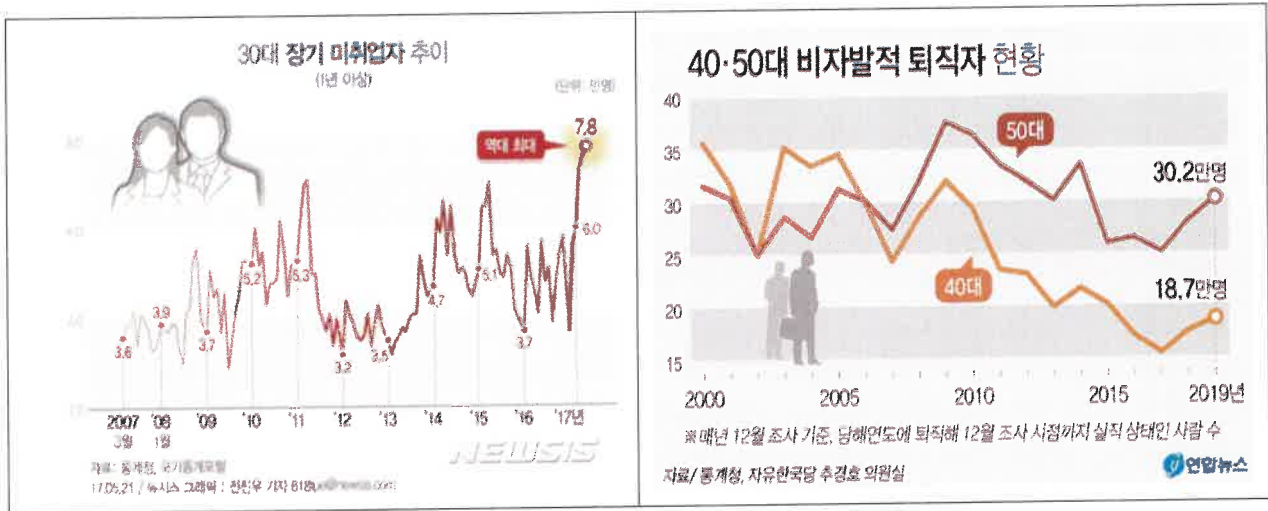
※ **【분석】** 통계청 자료와 교차분석 한 결과, '17년 당시 30대 장기 미취업자(1년 이상)가 역대 최대인 7만8,000명, '19년 40·50대의 비자발적 퇴직자수가 각각 30만2,000명, 18만7,000명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민원 신청건수와 연관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최근 5년간('18~'22) 국민신문고 건강보험료 관련 연령별 민원건수 현황>

(단위 : %)

| 구분 | 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 건수 | 117,721 | 428  | 12,255 | <b>29,159</b> | <b>25,225</b> | <b>33,443</b> | 12,409 | 2,737 | 2,065 |
| 비율 | 100.0   | 0.36 | 10.41  | <b>24.77</b>  | <b>21.43</b>  | <b>28.41</b>  | 10.54  | 2.32  | 1.75  |





○ 성별 확인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민원건수가 2배 정도 높게 발생

<최근 5년간('18~'22) 국민신문고 건강보험료 관련 성별 민원건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건수 | 117,721 | 6,923 | 4,701 | 8,295 | 91,065 | 6,737 |
| 남성 | 79,291  | 4,410 | 3,191 | 5,977 | 61,936 | 3,777 |
| 여성 | 38,430  | 2,513 | 1,510 | 2,318 | 29,129 | 2,960 |

▶ 2021년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민원 급증

○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통장압류·해제 등 민원이 36,992건(31.42%)으로 다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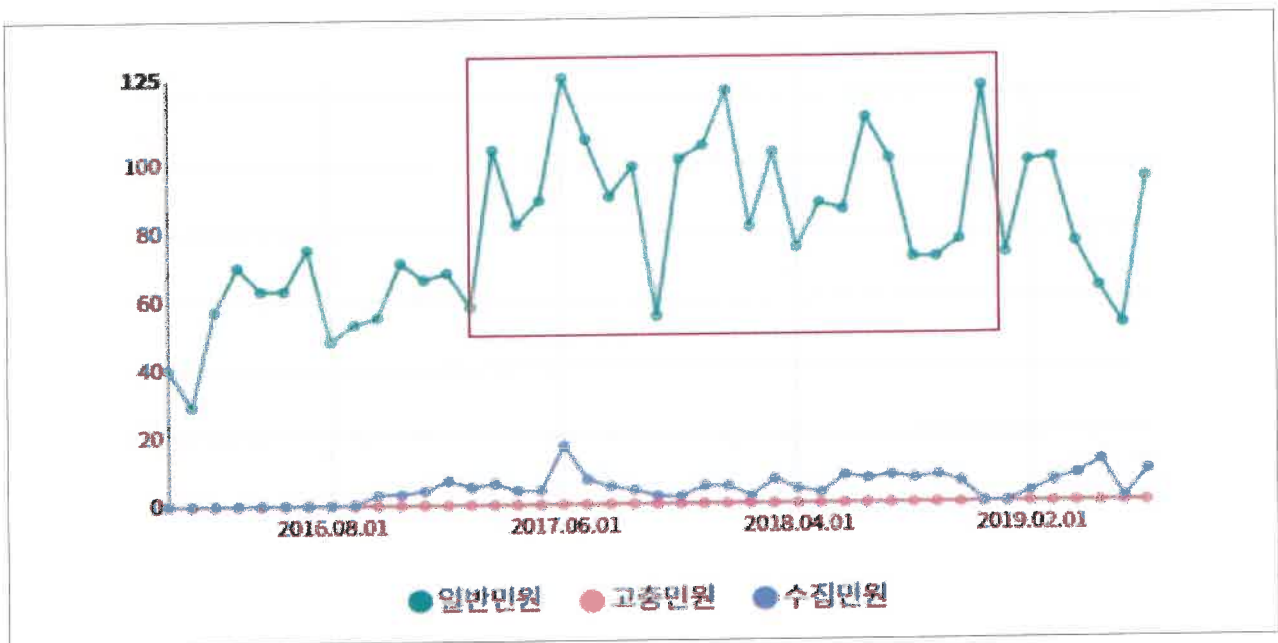
<최근 5년간('18~'22) 국민신문고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계       | 통장압류·해제 등 | 분할납부·체납징수 | 결손처분·급여제한 | 부당이득·자격변동   |
|----|---------|-----------|-----------|-----------|-------------|
| 건수 | 117,721 | 36,992    | 2,458     | 2,377     | 1,017       |
| 비율 | 100.0   | 31.42     | 2.09      | 2.02      | 0.86        |
| 구분 | -       | 감액·감면     | 연대납부·부과이의 | 통지        | 기타(국민지원금 등) |
| 건수 | -       | 3,691     | 13,246    | 3,293     | 54,647      |
| 비율 | -       | 3.14      | 11.25     | 2.80      | 46.42       |

- (키워드트렌드) '건강보험료' 민원신청 건수는 '17년부터 급증한 후 '18년 말까지 지속, '19년 7월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분석】 최근('20. 3월 기준) 일시휴직자 160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26만명 증가, 소기업·소상공인폐업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금 지급건수 1만1,792건 (전년대비 40.8%)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민원 증가 우려



- (연관어 분석) '건강보험료' 최다 연관어는 '지역가입자'로 확인, 이는 고충민원인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로서 지속되어 온 경기불황 여파로 건보료 체납처분 관련민원 등으로 예측

※ 【분석】 민원신청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용불량자 또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통장압류, 분할납부 등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연관어가 상당수 확인



### Ⅲ

## 일반현황

### 가. 건강보험 및 요양기관 현황

- (적용인구수) '21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수는 5,107만명 수준으로 이 중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는 비율은 27.7%(1,423만명) 해당

※ 지역가입자(14,232,314명) 중 80세 이상 노령인구는 4.46%(634,502명) 수준

#### <최근 5년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의료보장                    |    | 52,427           | 52,557           | 52,880           | 52,871           | 52,929           |
| 건강<br>보험<br>①           | 소계 | 50,941           | 51,072           | 51,391           | 51,345           | 51,412           |
|                         | 직장 | 36,899           | 36,990           | 37,227           | 37,150           | 37,180           |
|                         | 지역 | 14,042           | 14,082           | 14,164           | 14,195           | 14,232           |
| ② 의료급여<br>(전체대비 대상자 비율) |    | 1,486<br>(2.83%) | 1,485<br>(2.83%) | 1,489<br>(2.82%) | 1,526<br>(2.89%) | 1,517<br>(2.87%) |

☞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요양기관수) '21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수는 98,479개소로 전년대비 1,737개소 증가

※ 전체 요양기관 중 병원·요양병원 수는 전대 대비 각각 7.79%, 7.46% 감소

####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 계      | 상급<br>종합 | 종합<br>병원 | 병원    | 요양<br>병원 | 정신<br>병원 | 의원     | 치과     | 한방     | 보건소<br>등 | 약국     |
|----------|--------|----------|----------|-------|----------|----------|--------|--------|--------|----------|--------|
| 2020     | 96,742 | 42       | 319      | 1,515 | 1,582    | -        | 33,115 | 18,496 | 14,874 | 3,494    | 23,305 |
| 2021     | 98,479 | 45       | 319      | 1,397 | 1,464    | 250      | 33,912 | 18,823 | 15,005 | 3,491    | 23,773 |
| 전년<br>대비 | 1.80   | 7.14     | 0.00     | -7.79 | -7.46    | -        | 2.41   | 1.77   | 0.88   | -0.09    | 2.01   |

☞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치과 : 치과병원·치과의원, 한방 : 한방병원·한의원, 보건소 등 : 보건진료소, 조산원 등)

- (징수율) '21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69조4,869억원, 징수율은 **99.4%** (69조417억원)에 달함

※ '21년 지방세 징수실적 비교 : 부과액 116조7,659억원, 징수액 112조7,984억원, 징수율 **96.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 억원)

| 구 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소계  | 부과액          | 504,168 | 538,965 | 591,328 | 631,114 | 694,869                          |
|     | 징수액          | 501,496 | 538,076 | 589,290 | 628,765 | <b>690,417</b><br><b>(99.4)</b>  |
| 직장  | 부과액          | 424,486 | 459,221 | 507,712 | 540,194 | 594,666                          |
|     | 징수액          | 422,896 | 458,013 | 505,847 | 538,630 | <b>589,968</b><br><b>(99.2)</b>  |
| 지역  | 부과액          | 79,682  | 79,744  | 83,616  | 90,921  | 100,202                          |
|     | 징수액<br>(징수율) | 78,600  | 80,063  | 83,443  | 90,135  | <b>100,449</b><br><b>(100.2)</b> |

☞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 (체납액) '21년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1조7,025억원(99.3만가구), 이 중 연소득 100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약 66만가구(9,654억원)임

<최근 3년간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체납액 현황>

(단위 : 세대, 백만원)

| 연소득<br>(만원)   | 2020           |                  | 2021           |                  | 2022. 7월       |                |
|---------------|----------------|------------------|----------------|------------------|----------------|----------------|
|               | 세대수            | 체납액              | 세대수            | 체납액              | 세대수            | 체납액            |
| 총합계           | 1,099,964      | 1,847,294        | <b>993,108</b> | <b>1,702,553</b> | 952,908        | 1,616,704      |
| <b>100 이하</b> | <b>742,318</b> | <b>1,073,366</b> | <b>664,853</b> | <b>965,390</b>   | <b>648,478</b> | <b>907,345</b> |
| 100 초과 300 이하 | 83,973         | 125,956          | 80,046         | 121,570          | 76,711         | 111,421        |
| 300 초과 500 이하 | 57,036         | 94,212           | 52,591         | 88,733           | 49,187         | 82,076         |
| 500 초과 1천 이하  | 89,244         | 171,196          | 80,621         | 159,202          | 77,435         | 153,015        |
| 1천 초과 5천 이하   | 115,372        | 315,863          | 103,513        | 297,385          | 90,754         | 281,419        |
| 5천 초과 1억 이하   | 8,926          | 41,659           | 8,371          | 42,078           | 7,442          | 43,989         |
| <b>1억 초과</b>  | <b>3,115</b>   | <b>25,042</b>    | <b>3,113</b>   | <b>28,195</b>    | <b>2,901</b>   | <b>37,438</b>  |

☞ '22년 국감 제출자료



- (급여제한) '21. 8월 기준,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인 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비중이 28.0%(12만1,857명) 차지

※ '22. 9월 이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 ① 【소득】 연소득 336만원 이하 최저 월보험료 19,500원 ② 【재산】 5천만원까지 모든세대 공제 ③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건강보험가입자(직장·지역)의 월보험료별 급여제한 현황, 21.08.17. 기준>

(단위 : 명, %)

| 월보험료            | 계(직장+지역)       |             |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          |             |
|-----------------|----------------|-------------|---------------|-------------|----------------|-------------|
|                 | 제한자            | 비율          | 제한자           | 비율          | 제한자            | 비율          |
| 계               | 434,442        | 100.0       | 141,805       | 100.0       | 292,637        | 100.0       |
| <b>5만원 이하</b>   | <b>121,857</b> | <b>28.0</b> | <b>21,156</b> | <b>14.9</b> | <b>100,701</b> | <b>34.4</b> |
|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149,381        | 34.4        | 80,579        | 56.8        | 68,802         | 23.5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12,697        | 25.9        | 32,294        | 22.8        | 80,403         | 27.5        |
|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33,441         | 7.7         | 4,907         | 3.5         | 28,534         | 9.8         |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12,384         | 2.9         | 1,970         | 1.4         | 10,414         | 3.6         |
| 50만원 초과         | 4,682          | 1.1         | 899           | 0.6         | 3,783          | 1.3         |

☞ '21년 국감 제출자료

- (결손처분) 5년간 결손처분 승인 건수는 약 120만건, 결손처분액은 약 1조5천억원 규모이며, 연평균 3천억원 규모 결손처분액 발생

※ 장기불납채권 결손처분 사유 : 경제적 빈곤자, 부도 및 파산자(사업장),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기타 등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계              |              | 지역      |       | 직장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1 | <b>189,244</b> | <b>2,895</b> | 168,326 | 1,302 | 20,918 | 1,593 |
| 2020 | 247,285        | 3,819        | 217,098 | 2,079 | 30,187 | 1,740 |
| 2019 | 225,390        | 3,471        | 199,243 | 1,696 | 26,147 | 1,775 |
| 2018 | 171,567        | 2,628        | 148,121 | 1,186 | 23,446 | 1,442 |
| 2017 | 361,733        | 1,882        | 344,868 | 671   | 16,865 | 1,211 |

☞ '19년 국감 제출자료

○ (요양급여 현지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급여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실시

※ 지난 7년간('13~'19.6월) 총 745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 이 중 74%인 549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사실 확인

<최근 7년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형사고발'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 계   | 거짓청구 | 자료 미제출 | 조사거부·방해 | 업무정지 미이행 등 |
|--------|-----|------|--------|---------|------------|
| 계      | 745 | 549  | 70     | 113     | 13         |
| 2013   | 119 | 73   | 20     | 26      | 0          |
| 2014   | 57  | 27   | 19     | 11      | 0          |
| 2015   | 61  | 43   | 6      | 10      | 2          |
| 2016   | 113 | 85   | 9      | 19      | 0          |
| 2017   | 144 | 117  | 8      | 14      | 5          |
| 2018   | 178 | 141  | 8      | 25      | 4          |
| '19.6월 | 73  | 63   | 0      | 8       | 2          |

☞ '19년 국감 제출자료

※ **부당청구** 확인된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총 4,441개 : 업무정지 1,327 / 과징금 1,008개), 과징금액은 1,221억2,600백만원 규모

<최근 7년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연도     | 계     | 업무정지  | 과징금   | 환수    | 처분절차 중 | 과징금액    |
|--------|-------|-------|-------|-------|--------|---------|
| 계      | 4,441 | 1,327 | 1,008 | 1,353 | 753    | 122,126 |
| 2013   | 656   | 263   | 147   | 246   | -      | 10,491  |
| 2014   | 623   | 206   | 183   | 234   | -      | 26,469  |
| 2015   | 671   | 297   | 182   | 192   | -      | 28,878  |
| 2016   | 735   | 306   | 220   | 205   | 4      | 33,322  |
| 2017   | 721   | 183   | 191   | 285   | 62     | 20,153  |
| 2018   | 792   | 72    | 85    | 191   | 444    | 2,813   |
| '19.6월 | 243   |       |       |       | 243    | -       |

☞ '19년 국감 제출자료

## 나. 건강보험 제도현황

-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하한액은 아래와 같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상한액 3,911,280원(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인이 부담하는 최대보험료(건강+장기요양)은 4,411,924원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비교>

(단위 : 원)

| 구 분        |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        |
|------------|----------|-----------|-----------|-----------|
| 지역가입자      | 하한액      | 19,780    | 2,532     | 22,312    |
|            | 상한액      | 3,911,280 | 500,644   | 4,411,924 |
| 직 장<br>가입자 | 급여기준     | 하한액       | 19,780    | 22,312    |
|            |          | 근로자 본인부담  | 9,890     | 11,156    |
|            |          | 상한액       | 7,822,560 | 8,823,848 |
|            |          | 근로자 본인부담  | 3,911,280 | 4,411,924 |
|            | 급여외 소득기준 | 상한액       | 500,644   | 4,411,924 |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구분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대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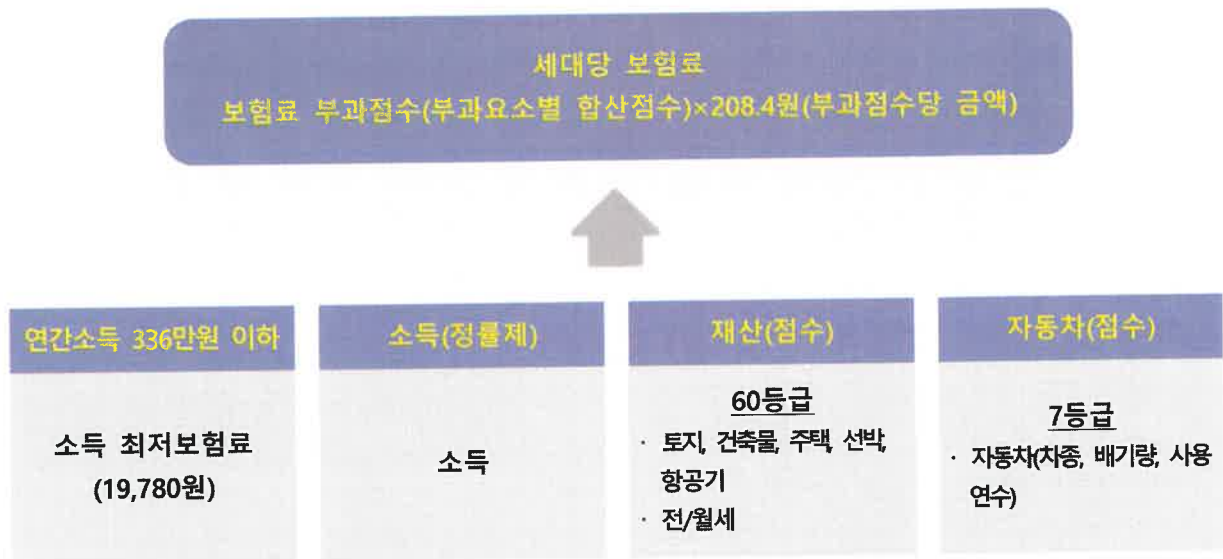
| 구 분 |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                                     |            |
|-----|---------------------------|-----------|-------------------------------------------|------------|
|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세대주(지역가입자)                                | 세대원(지역가입자) |
| 보험료 | 소득기반                      | 없음        | 소득+재산+자동차                                 | 세대주와 동일    |
| 주 소 | -                         | 다른 주소지 가능 | -                                         | 동일주소지만 가능  |
| 특 징 | 피부양자 조건충족 : 지역가입자 보험료 미발생 |           | 모든 세대원의 재산, 소득 합산, 세대주에게 보험료 부과(피부양자 미적용) |            |

-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금액이 5,516만원 상당일 경우 건강보험료 상한액에 해당

### <연간 소득금액 구간별 점수>

| 연간 소득금액                      | 점수                                               |
|------------------------------|--------------------------------------------------|
| 336만원 이하(하한액 기준)             | <b>95.25911708점</b>                              |
|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 초과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 <b>6억6,199만원 초과</b> (상한액 기준) | <b>18,768.13점</b>                                |

- 지역가입자의 부과요소는 ① **소득** ② **재산** ③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



- 연간소득이 336만원 이하 또는 초과세대 여부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 (연소득 336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월)]
- ※ (연소득 336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월)

- (소득)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 소득 적용방법

-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금액 100% 적용
- ▶ 근로, 연금소득 : 소득금액 합계액 50% 적용



- **(재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와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액

※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토지 제외

※ 재산 적용방법

-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원

- **(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에 적용

※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 ▶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 자동차 적용방법

-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시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점수>

| 등급  | 1년 미만 | 1년 이상<br>2년 미만 | 2년 이상<br>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5년 미만 | 5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7년 미만 | 7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br>9년 미만 |
|-----|-------|----------------|----------------|----------------|----------------|----------------|----------------|----------------|----------------|
| 국산차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 외산차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2023년 자동차 등급별 점수>

| 구분 |            | 감액율 및 결정점수 |       |       | 구분 |            | 감액율 및 결정점수 |       |       |
|----|------------|------------|-------|-------|----|------------|------------|-------|-------|
| 등급 | 배기량        | 3년 미만      | 6년 미만 | 9년 미만 | 등급 | 배기량        | 3년 미만      | 6년 미만 | 9년 미만 |
|    |            | 100%       | 80%   | 60%   |    |            | 100%       | 80%   | 60%   |
| 1  | 800cc 이하   | 18         | 14    | 11    | 5  | 2,500cc 이하 | 155        | 124   | 93    |
| 2  | 1,000cc 이하 | 28         | 23    | 17    | 6  | 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 3  | 1,600cc 이하 | 59         | 47    | 35    | 7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 4  | 2,000cc 이하 | 113        | 90    | 68    |    |            |            |       |       |

○ **(납부독촉)**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미납시 **체납세대에게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 발급

※ 독촉고지서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 독촉고지는 가입자 1인에게 행한 독촉이라도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에게 효력 발생

**<건강보험료 납부독촉 업무흐름도>**



※ **연체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납부기한 익일)로부터 체납기간에 따라 **최고 5%**까지 부과(체납된 가산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체납보험료의 3/100
-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100을 가산

○ **(급여제한)** 보험료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 의료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제한하지 않고 **사후에 급여제한을 통지**

※ 진료사실 확인시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환수조치(단, 소득 2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 1억원 초과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급여 제한)

**<건강보험료 급여제한자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 및 청구방법 안내>**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 대상자 확인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수진자 자격확인

**수진자 자격확인**

● 수진자 자격 확인

주변등록번호 [ ] 수진자성명 [ ] 진료일자 [ ]

● ☐ 건강보험증번호 조회

● 건강보험 자격정보

|            |         |
|------------|---------|
| 수진자성명      | 요양기관명   |
| 자격여부       | 자격취득일자  |
| 자격상환일자     | 건강보험증번호 |
| 자격상환(재)일/지 | 비고      |

급여제한 여부 ☐ 급여제한자(건강보험 전액비율 10% 90%로 진료 본인부담률 상구대입) ☐

인원구분 (의사) ☐ (간호사) ☐ (약사) ☐ (치과) ☐ (한방) ☐ (의료기기) ☐ (의료기기) ☐

인원비치명(성명) [ ] 사자명 [ ] 연락처 [ ]

●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 :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

■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진료비 지급 불가**

● **진료비 청구·명세서 기재방법**

■ 청구액(공단부담금) 항목 : 0원

■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 요양급여비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청구액(공단부담금)이 없어도 반드시 위 청구방법대로 청구하여야 추후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청구된 자료는 반송사유 85번 처리됨

▶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항목에 기재하면 안 됨

▶ 상세한 급여제한 진료비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http://www.hira.or.kr)) 참조

요양기관 업무보충 서비스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각종급여기준정보에서 '청구방법' 으로 조회(등록순번 17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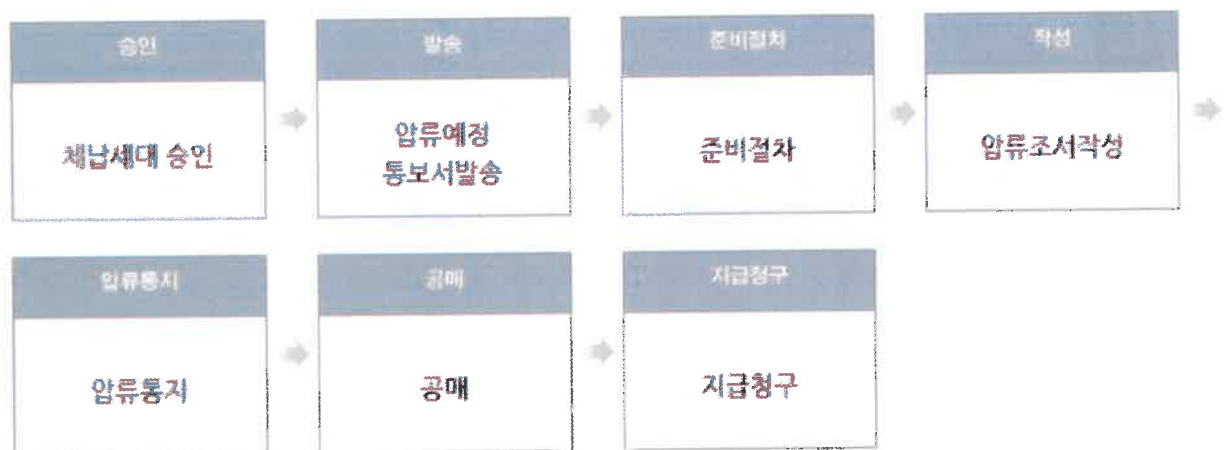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 진료비 환급**

◆ 공단은 체납보험료 완납 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청구·명세서 자료를 기초로 수진자가 납부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공단이 수진자에게 환급신청 안내)

○ **(체납처분)** 체납보험료를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채권을 충당

※ 지역가입자 : ① 체납기간이 3월 이상이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사업소득자 ② 체납기간 3월 이상이고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 등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압류·공매 업무흐름도>**



○ **(분할납부)** 가입자가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승인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 승인 취소

【대만의 '全民健康保險' 및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별 특징 비교】

| 구 분          | 대만 '全民健康保險'                                                                                                              | 한국 '국민건강보험'                                                                            |
|--------------|--------------------------------------------------------------------------------------------------------------------------|----------------------------------------------------------------------------------------|
| 운영방식         | ○ 사회보험(의무가입)                                                                                                             | ○ 사회보험(의무가입)                                                                           |
| 징수율          | ○ 97% ~ 99%                                                                                                              | ○ 99.4%('21년 기준)                                                                       |
| 체납자 규모       | ○ 전체인구의 약 3.5%                                                                                                           | ○ 체납액 1조7,025억원(99.3만가구)                                                               |
| 보험료 지원       | ○ 빈곤층, 차상위계층,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14년 304만명, 239억대만달러)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에 의거, 경감대상을 명시                                              |
| 대출제도         | ○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 무이자 대출<br>* 빈곤퇴치기금에서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 지원<br>* '14년도 3,045건(1억9천만대만달러)                              | ○ 없음                                                                                   |
| 분할납부         | ○ <b>2~48회</b>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 ○ <b>24회</b> 이내                                                                        |
| 민간자선 지원      | ○ 체납자 부담능력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복지기관 또는 자선기관에 체납자 지원을 요청                                                             | ○ 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 제정, 지원기관(민간기업·사회단체) 협약체결을 통해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대납지원 사업('22년 29만2,162세대 186억 지원) |
| 긴급지원         | ○ 보험급여가 정지되었더라도 의사가 입원, 응급의료, 필수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동시에 체납보험료 해결                                                    |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등 해당요건 충족자에 한해 한시적 지원                             |
| 복권기금 지원      |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복권기금에서 체납보험료와 의료비 지원                                                                              | ○ 없음                                                                                   |
| 결손처분         | ○ 있음                                                                                                                     |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                                                                 |
| 취약계층 의료혜택 보장 |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차상위계층, 특수가정상황 아동(한부모가정, 사별, 이혼,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배우자 형무소 복역중인 자, 비자발적 실업가정 등), <b>체납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 보장</b> | ○ ①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②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 ③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b>보험료 납부의무 제외</b>          |
| 급여정지         | ○ <b>2016년 6월 보험급여 제한제도 폐지</b>                                                                                           | ○ 있음( <b>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시 보험급여 제한</b> )                                                 |

## IV 문제점 분석

### 1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방치

#### □ 질병과 가난으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속 발생

-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

※ '22년 7월, 건보료 체납현황(연소득 100만원 이하) : 세대수 64만8,478세대 / 체납액 9,073억4,526만원

-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발생

※ 보건복지부 발간 '전국 자살사망 분석결과보고서(2013~2017)'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구간별 자살사망발생률은 의료급여 수급자 구간(43.5명)이 가장 높고, 소득하위구간(30명), 중위구간(24.6명), 상위구간(19.1명) 순으로 확인

####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주요 사망사건 현황>

| 연도       | 사건명                | 사망 당시 상태                   |
|----------|--------------------|----------------------------|
| 2014. 2월 | 송파 세모녀 사망          | 소득 없지만 매월 47,060원 건강보험료 부과 |
| 2019. 7월 |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 단수, 임대료(월세) 등 장기체납         |
| 2019.11월 | 성북 네모녀 사망          | 채무 불이행으로 월세, 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  |
| 2022. 8월 | 수원 세모녀 사망          |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          |
| 2022.11월 | 신촌 모녀 사망           | 전기요금,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   |
| 2022.11월 | 서대문구 모녀 사망         | 단전, 월세,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  |
| 2023. 3월 | 마포 오피스텔 독거노인 분신 사망 | 관리비 장기체납, 생활고 극심           |
| 2023. 5월 | 송파 60대 여성 사망       | 수도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   |



□ **정부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

-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해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어 장기체납 상태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

※ 의료급여 수급자격 :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② 1촌 관계인 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도 일정 수준 이하인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한 의료급여 비수급 취약계층 규모는 약 73만 명(추정), '21년 건강보험연구원 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 **('15. 7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9.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 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 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2.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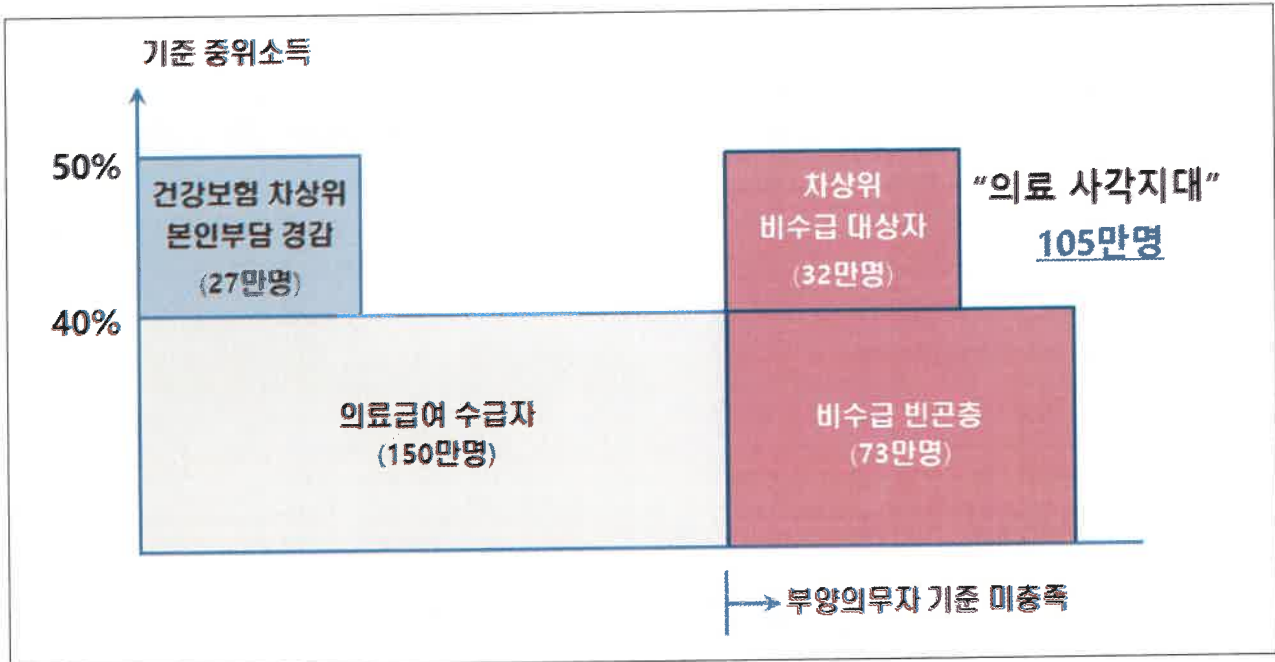
- 또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 일부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수급자에서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 ① 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②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현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이면서 본인부담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비수급 대상자 규모는 약 32만 명(추정), '21년 건강보험연구원 자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현황(단위 : 명)>

| 연도   | 계              | 희귀난치·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 |
|------|----------------|------------|---------|-----------|
| 2018 | 272,842        | 27,491     | 130,130 | 115,221   |
| 2019 | 270,304        | 27,798     | 134,178 | 108,323   |
| 2020 | <b>269,419</b> | 28,169     | 136,662 | 104,588   |



- 정부의 **최저보험료 도입** 이후에도 저소득 빈곤층은 이마저도 부담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하고 **실제 상당수는 장기체납 상태로 확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단계, '22. 9월 적용) :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현행 월 1만4,650원(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월 1만9,500원(연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변경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기준이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 350만 세대로 증가하였고, 시행 이전인 '22년 8월 **최저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36만8,000세대(체납액 4,178억 원)에서 10월 **59만5,000세대(체납액 7,641억 원)**로 증가하였다고 발표



## 2 체납보험료 징수시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관행

### 가. 고충민원 유발하는 예금채권 압류행태 만연

#### □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생계형 체납자 고충민원 지속

- 건보공단이 체납보험료 징수의 효율성·행정편의성만 고려한 체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방식을 도입('09.3월)한 결과,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

※ 최근 5년간('18.1월~'22.12월) 국민권익위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고충민원 817건 중  
'체납보험료 포괄예금 압류처분' 민원이 약 23% 차지

#### <참고> 건강보험공단 '예금압류 관련서류 전자송달 관련 업무협약' 체결('09.3월)

- ▶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18개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은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

- 특히, '통장 등 예금압류 해제 요청' 관련 고충민원의 상당수(65%)가  
합의해결되는 반복민원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체납처분  
업무관행 개선이 절실한 실정

※ 최근 3년간('20~'22) 예금통장 압류건수는 전체 129만4천 건에 달함('20년 26만2천 건,  
'21년 41만3천 건, '22년 61만9천 건)

- 민원인의 상당수는 최저 월보험료 조차도 납부할만한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체납자로서 포괄적인 통장압류로 인해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불가능

※ '19. 8월 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수는 141만5,052가구이며  
이 중 건보료 5만원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수는 65.6%에 달함

※ 통장압류로 지급이 정지되면, 자동이체를 약정한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 이체가 정지돼 연체될 뿐 아니라 일용노임조차 인출이 곤란함

<참고>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사례('19. 7월)

- ▶ 8년 넘게 직장 없이 일용직으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47세 남자. 작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센터에 긴급생계비 신청.

작년과 올해 택배 상·하차로 간신히 생활했으며 돈 들어오면 밀린 월세 내는데 다 쓰고 있는데, 현재 밀린 월세와 전기·가스 이달에 끊길 위기. 전화요금 내지 못해 발신 정지 상태.

**건강보험에서 통장압류로 인해 일용직 일을 못함. 본인명의 통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함. 택배 상·하차도 본인통장 있어야 함.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사회공동체 신청했는데 여기도 본인통장 필요함. 이것마저 건강보험에서 통장압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참고>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사례('20.10월)

- ▶ 저는 '08년 이후 가족들과 떨어져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49세 건설일용노동자임. 다름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체납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로 소득이 예전의 1/3로 줄어든 상태에서 도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되질 않았음.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며, 농협통장을 압류를 하였고, 이후 우체국 통장마저 압류를 당하여, **저는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집에 생활비 또한 전혀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건강보험에서는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 예정이라고 여러 번 문자를 보내왔지만, 압류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 4명이 자살이라도 해야 할 상황에 처함.**

지금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방법도 없고 압류통장이라도 풀어서 밀린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가족들의 건보료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압류된 통장을 하루빨리 풀어주시길 바라며 이 민원을 씁니다. 통장압류만 풀어 주십시오.

<참고>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사례('22.12월)

- ▶ 얼마 전 친누나(○○○, 72.08.20)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장압류를 당하였음. **10여 년 전 잠깐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하였는데, 그 사이 약간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라고 함.**

**누나는 현재 중증장애인으로 몸이 아프고 거동이 힘든 상태로 하루 3시간씩 일을 나가며 60여 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함.** 미혼이고, 1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이 10여 년이 지난 후, 1인 가족으로 살기도 고달픈 중증장애인에게 몇 십만원 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압류를 업무행태가 정당하냐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현황('19. 8월 기준)>**

(단위 : 가구, 억원)

| 구분               |               | 계    |        | 5만원 이하      |               | 5만원 초과 |        |
|------------------|---------------|------|--------|-------------|---------------|--------|--------|
|                  |               | 가구수  | 보험료    | 가구수         | 보험료           | 가구수    | 보험료    |
| 체납자              |               | 378만 | 31,802 | <b>248만</b> | <b>18,989</b> | 130만   | 12,813 |
| 체<br>납<br>기<br>간 | 6개 월 미 만      | 188만 | 2,938  | <b>107만</b> | <b>770</b>    | 81만    | 2,168  |
|                  | 6 ~ 24개월      | 101만 | 7,027  | <b>68만</b>  | <b>2,645</b>  | 33만    | 4,382  |
|                  | 24개월 이상       | 89만  | 21,837 | <b>73만</b>  | <b>15,574</b> | 16만    | 6,263  |
|                  | 계<br>(6개월 이상) | 190만 | 28,864 | <b>141만</b> | <b>18,219</b> | 49만    | 10,645 |

▶ 출처 : 건강보험공단 국감 제출자료

-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압류금지 소액예금 통장' 압류가 빈발

※ 압류금지 소액예금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및 제246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의 생계비로서 185만원 이하의 예금을 말함

-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 가능

**<참고>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압류기관과 금융결제원간 압류처분 송수신 정보내역 현황(자료, 금융결제원)>

| 구분 | 데이터 항목                               | 비고                         |
|----|--------------------------------------|----------------------------|
| 공통 | ▶ 채무자(재3채무자) 성명, 주소                  |                            |
|    | ▶ 채권자(채납자) 상호, 성명                    |                            |
|    | ▶ 채권자(채납자)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                            |
|    | ▶ 채권자(채납자) 주소, 우편번호                  |                            |
|    | ▶ 압류기관 명칭, 전화번호, 담자자명                |                            |
|    | ▶ <b>채권자(채납자) 계좌번호</b>               | <b>국세청, 행정안전부, 관세청만 해당</b> |
| 압류 | ▶ 압류채권의 표시<br>▶ 압류금액<br>▶ 압류기관별 상세정보 | 기관별 상이(납부기한, 연체금, 세목코드 등)  |
| 해제 | ▶ 압류연월일                              |                            |

☞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세청 이외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기관(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계좌정보는 **공란처리**

- 반면, 건강보험료는 채납자의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단 **채납자의 모든 통장에 대해 포괄적 압류가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상황**

※ 저소득층 또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조세나 사회보험료 채납자로 쉽게 전락할 우려가 상당하나 **건보공단은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 채납자(6개월 이상)에 대해서도 모든 예금통장을 우선적으로 압류**하고 있음

<생계형 채납자 예금통장 등 재산압류 현황>

(단위 : 건)

| 연도      | 예금통장         | 자동차          | 부동산        | 임금       | 기타           |
|---------|--------------|--------------|------------|----------|--------------|
| 2015    | 1,971        | 1,405        | 213        | 2        | 1,111        |
| 2016    | 1,475        | 1,817        | 228        | 2        | 956          |
| 2017.8월 | 983          | 1,132        | 209        | 5        | 759          |
| 합계      | <b>4,429</b> | <b>4,354</b> | <b>650</b> | <b>9</b> | <b>2,826</b> |

☞ 2017년 국감 제출자료(건강보험공단)

## □ 소액예금 통장압류 등 포괄적 예금채권 압류처분의 위법소지 내재

- 현재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성 상존

### <참고> '특정되지 않은 압류채권' 관련 대법원 판례

- ▶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어야 함(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 ▶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 지 신청 취지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압류는 무효가 됨(대법원 2012. 11.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대법원 1973. 1.30. 선고, 72다2151 판결)
- ▶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 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7. 6.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임

### <참고> 고충민원 사례(2AA-1509-210140)

-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공단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고, 현재 신용회복 중이라서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음. 유일한 예금계좌인 우체국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시중은행 10개의 잔액증명서를 모두 해 오거나 미납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다고 함. 다른 은행은 모두 추심해도 좋으니 우체국 계좌만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

※ 채권자에 의한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금융기관)가 통장 전체에 대해 금융거래를 정지하여도 월 185만원(생계유지비)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생계비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음('20.5월 전문가 의견청취)

<참고>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 관련 대법원 판례

- ▶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7. 6.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 현재, 건보공단에 의한 통장압류는 판결문을 근거로 하지 않아 법률적인 압류해제는 불가능한 실정

※ 건강보험공단의 징수담당자 재량(내부기준 포함)으로 압류와 압류해제가 결정

- 이러한 이유로 소액예금 통장이 압류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상황

※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중재 요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압류 해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통장압류 해제' 고충민원의 96.3%가 합의해결 처리)

□ 권익위의 '포괄압류처분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방치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행정편의적 포괄압류처분 관행을 개선하고자 소관기관에 관련 개선방안을 권고('13.6월, '16.9월)한 바 있으나, 불수용 의견 대부분

※ 권고 당시 소관기관의 개선안 관련 입장

- ▶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금융실명법」 훼손 가능성 우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13. 6월)
- ▶ 기획재정부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완료되면, 계좌를 특정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13. 6월)
- ▶ 건강보험공단은 '예금채권 등 압류진행 통보서' 발송시 소액금융재산(150만원 미만) 압류 제외 등 구제방법 명시('16. 9월 권고 → '18. 3월 이행)



<既存 권고과제 중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관련 개선방안 이행현황>

| 권고연월    | 개선방안                                                                                                                                | 이행여부                   |
|---------|-------------------------------------------------------------------------------------------------------------------------------------|------------------------|
| '13. 6월 | ▶ 조세 등의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및 추심을 위해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공적기관에서 금융재산 조회서비스 관련 규정 신설 및 서비스체계 구축(의견표명, 조치기한 '15. 6월)<br>⇒ 「금융실명법」 개정               | 미이행<br>(금융위)           |
|         | ▶ 금융재산 압류시 체납액 범위내에서 제3채무자(금융기관)별 채권 금액 및 특정한 계좌를 압류하도록 압류통지서에 명시(의견표명, 조치기한 '15. 6월)<br>⇒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 미이행<br>(기재부)           |
| '16. 9월 | ▶ 압류금지 예금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 마련                                                                                                         | 미이행<br>(건보공단)          |
|         | ▶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금지 및 구제 정보 고지 의무화<br>- ① 채권압류 통지서(체납자용)에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내용' 포함<br>- ② <u>소액금융재산 압류시 구제방법(잔액증명서 제출 등) 고지</u>               | 일부이행<br>(②항)<br>(건보공단) |

○ 소관기관은 '체납 건보료 압류시 고지의무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18.3월)한 바 있으나 여전히 '통장압류 해제' 민원 지속 발생

- 공단은 해당은행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개선효과는 미비

※ 개정사항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규정

문의 및 연락처

고객센터 1577-1000 (휴대폰 042-1577-1000)

※ 3개월 이상 미납된 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방문 시 신용카드(비씨·하나·삼성·롯데·현대·농협·씨티·광주)납부 가능하며 납부자가 납부금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미만은 해당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은행의 예금은 압류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br><br>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 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3. 27.> |

- 일용직 등 생계곤란자인 체납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동이 잦아 일반우편 송달만으로는 당사자 통지가 쉽지 않은 상황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에 의거, 일반우편으로 송달

**<「국세기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우편송달’ 방식 비교>**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
|-------------------------------------------------------------------------------------------------------------------------------------------------|-------------------------------------------------------------------------------------------------------------------------------------------|
|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br><br>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 |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 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b>동법 시행령 제47조의4</b>                                                                                                                      |
|                                                                                                                                                 |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4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b>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b>                                               |

지역 체납(미납)

건강보험료 독촉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용 QR 코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전국편의점

(125 C) 세븐일 convenience store

독촉기간(개월) 2018. 09 - 2019. 03 (7) 2018. 09 - 2019. 03 (7)

- 연체금은 매월 15일까지 일할계산된 금액이며, 16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됩니다.
- 징수포털(gi4n.nhis.or.kr)에서 확인·납부하실 수 있으며, 가상계좌 및 수시고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9 년 04 월 19 일

\*\* 미납월 안내 \*\*

'18.09 '18.10 '18.11 '18.12 '19.01 '19.02 '19.03

총 체납금액 : 105,140원, 총 체납개월 : 7개월

수납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자율이체 신청 납부자번호 : 30164469171

### 【 건강(장기요양)보험 체납보험료 납부 안내문 】

1. 귀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 (병원진료, 장기요양서비스) 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는 가입자 모두가 연대납부 한

#### <참고> 고충민원 사례

- ▶ (사례1)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공단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계좌를 정지하고, 체납액의 50%를 납부해야 계좌정지를 풀어주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함. 건보공단이 대부업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너무나 처사라고 생각함 (2AA-1509-318012)
- ▶ (사례2) 신청인은 중간에 한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취업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은 당연히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음. 그리고 따로 보험료에 대해 연락 받은 사실도 없음. 그런데 공단은 갑자기 신청인 계좌를 압류하며 2014. 1월~2014. 10 월까지 지역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함. 신청인은 이 기간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계좌 압류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공단은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조사해 주기바람(2AA-1509-318012)
- ▶ (사례3) 신청인의 아들은 2004. 2월 당시 미성년자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2004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4년 후 돌아가셨음. 그런데 공단은 신청인의 아들에게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2004년분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2AA-1509-318012)

## 나. 예금통장 등의 '압류해제 요건' 구체성 결여

### □ 공단의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의 요건'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 내재

- 현재, 통장 등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는 근거규정이 모호하여 공단 각 지사 징수담당자의 재량적 행위가 우려

※ 건보공단 지사 담당자에 따라 통장 등의 압류해제 요건을 완납 또는 체납액의 50% 납부 등으로 안내

#### <참고>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사례

- ▶ 제가 사고를 당한 후 수입이 없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어 분할납부를 신청하였고 이후 계속된 연체로 인해 은행계좌가 압류되었음. 지금 병원에 와서 결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압류해제를 못 해준다함. 병원치료를 못 받아서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소연 하였는데도 담당자는 안 된다고 함.(18. 5월)

#### <참고> 고충민원 사례(2AA-1507-251797)

- ▶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예금계좌가 압류되었음. 지금 통장에 160만원이 있어서 30만원 입금 후,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체납금액의 50%를 납부해야 압류를 풀어줄 수 있다고 함. 체납금액의 50%는 전 재산인 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공단의 체납보험료와 관련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미비한 실정

※ 체납자의 납부의지 보호와 현실적인 납부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 적용

#### <참고> 압류해제의 요건(「4대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

##### ◆ 당연해제

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기타 사유 : 체납액 전액 충당, 체납액 전액 면제 등

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참고> 압류해제의 요건(「4대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

◆ 임의해제

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다.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권익위의 '통장압류 해제' 관련 개선권고 이후에도 공단 미이행

- '16. 9월 건보공단에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권고내용

▶ 압류통장에 대한 해제조건으로 공단에서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일정액 (체납액의 50% 미만)' 납부 후 분할납부 등의 압류통장 해제시 적용하고 있는 임의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예시) 체납기간, 체납금액, 납부성실도 등을 감안한 분할납부 조건 등을 구체화

- 최근까지 해당기관이 '압류해제의 요건'을 개선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국민신문고 '압류해제' 관련 민원신청 현황(건강보험공단 대상)>

| 연도   | 계     | '15 | '16 | '17 | '18 | '19 |
|------|-------|-----|-----|-----|-----|-----|
| 민원건수 | 1,477 | 205 | 259 | 276 | 359 | 378 |

<참고> 고충민원 사례(1AA-2002-0339722)

▶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이 겹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미납중임. 지금은 직장을 구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미납금을 내고 통장압류를 해제하려했으나 체납액의 50%를 한 번에 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함. 이미 통장압류로 급여도 못 빼는 상황에서 300만원이 넘는 돈의 50%를 한 번에 내기도 힘들고, 통장 압류해제를 해서 분할납부를해서라도 갚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20. 2월)

**<참고>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사례('20. 3월)**

- ▶ 저는 남양주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학원을 휴업한지 한 달반이 되어감. 다행히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저리로 대출지원 해준다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 미소금융, 신용보증재단에 다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4대 보험료 체납 압류가 있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음**.(작년 10월, 4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다고 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보험료 밀리지 않고 납부하고 있고, 미납금액 중에서 500만원 납부하고, 현재 1천100만원 정도 남았음)

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300만원 정도 더 결제를 할 테니 **정부지원 대출 받을 수 있게 압류 해제 해달라고 상담하니 무조건 완납해야지만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함.**



### 3 건강보험(의무가입)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취지 훼손

####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접근이 제한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기는 하나 건보료가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

※ 고가·다주택 보유 체납자와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면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불가

#### <참고>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사례('19. 3월)

- ▶ 신청인은 올해 80세의 노인으로 오래 전 사업부도와 재기실패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당뇨, 치매, 뇌경색 등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던 중 **병원진료 접수시 급여제한이 되어 있어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의약품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함** (보험료 체납액 8,299,500원, 부당이득금 11건 26,806,616원).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과 부당이득금 미납내역 통지를 받은 상태로 노인기초연금 25만원 외에는 수입이 없는 사정을 설명하며 **미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하겠으니 급여제한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 최근 5년간 전체 보험급여 제한 통지건수(244만5,180명) 중 **취약계층(월 보험료 5만원 이하) 통지 비율이 45.8%**에 달함

#### <최근 5년간 보험급여 제한 통지 건수 현황>

(단위 : 명)

| 연도   | 계         |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 월 보험료 5만원 초과 |
|------|-----------|------------------|--------------|
| 계    | 2,445,180 | <b>1,120,409</b> | 1,324,771    |
| 2018 | 404,311   | 199,118          | 205,193      |
| 2019 | 409,039   | 193,494          | 215,545      |
| 2020 | 726,397   | 319,095          | 407,302      |
| 2021 | 509,410   | 212,951          | 296,459      |
| 2022 | 396,023   | 195,751          | 200,272      |

- 공단이 '건보재정의 누수 방지·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라는 원칙만을 고수한 채, **사전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취지 훼손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체납 횟수, 소득 및 재산의 기준·확인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

※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방식

- ▶ **(1단계)** 체납자가 의료서비스(병·의원, 약국 등)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제한하지 않고 우선 보험급여를 받게 한 다음, 사후에 급여제한을 통지**하고 진료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환수
- ▶ **(2단계)**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고액체납명단공개자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 세대)'에게 진료접수단계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사전적으로 급여를 제한**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6회**)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1. **제6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 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체납자 중에 고가·다주택 보유세대 징수에 주력할 필요**

※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 1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는 총 2만879세대 (10억 이상 주택보유 252세대 포함), 총 체납액은 529억5,000만원에 달함 ('19.10월 국감제출 자료)

- **취약계층 체납자의 급여제한시** 가입자나 세대원 중 **희귀·난치성, 급성질환자** 등이 포함될 경우 '**의료약자의 건강권 침해**' 소지 우려

※ 체납자와 그 세대원이 ‘사후급여제한’을 통보받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추후 ‘부당이득금’ 청구서가 통지, 체납독촉·부당이득금청구·압류통보 등에 시달리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병원을 갈 수 없음('20. 5월 관계자의견청취)

※ **취약계층 장기체납가구 병·의원 미이용자 비율(21%)이 일반국민 대비 3.5배 높음**

| 구 분          |    | 취약계층 장기체납가구  | 의료급여 수급가구 | 일반국민 |
|--------------|----|--------------|-----------|------|
| 병·의원<br>이용횟수 | 전체 | 13.5회        | 55회       | 21회  |
|              | 입원 | 0.4회         | 20회       | 3회   |
|              | 외래 | 13.1회        | 35회       | 18회  |
| 미이용자 비율      |    | <b>21.0%</b> | 3%        | 6%   |

▶ 취약계층 장기체납가구('18년말 기준) : 월납부 건보료 1만원 이하, 12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가구

○ 건보료 체납자 중에는 불성실 납부자라기보다 **사업부진, 휴·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자들이 상당수 존재**, 이들이 **임시·일용직으로 전전함**에 따라 장기체납자로 전락

※ '18년 기준, 전체 급여제한자 80만 가구(91만명) 중 건보료 5만원 이하 납부체납자는 55만 가구(62만명), 이 중 25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38만 가구(42만명)임

#### <2019년 건강보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일부 발췌)>

| 연번   | 성명  | 사업장명 | 나이 | 체납자주소                   | 체납기간          | 총체납액  | 납부기한     | 체납요지          |
|------|-----|------|----|-------------------------|---------------|-------|----------|---------------|
| 6626 | 강철민 |      | 48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7       | 200808~201612 | 1,000 | 20170110 | 건강보험 85개월 체납  |
| 6627 | 윤순희 |      | 6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4번길 17-1 | 201111~201612 | 1,000 | 20170110 | 건강보험 57개월 체납  |
| 6628 | 이선하 |      | 48 |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184-2      | 200208~201611 | 1,000 | 20161210 | 건강보험 133개월 체납 |
| 6629 | 김후곤 |      | 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랑역로14길 34-6  | 200203~201612 | 1,000 | 20170110 | 건강보험 170개월 체납 |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횟수는 증가하고, 건보료 체납총액과 월평균 체납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급여제한에 따른 징수 기대효과 미미

※ 장기체납자들의 평균 체납횟수 36.3회, 가구당 누적체납액은 평균 140만원, 이를 체납된 월 보험료로 환산시 평균 47,000원으로 소액의 보험료가 낮은 빈도로 체납되고 있음('17년 참여연대 건강보험 분석자료 발췌)

| 항 목 | 급 여     |         |           | ④ 비급여 |
|-----|---------|---------|-----------|-------|
|     | 일부 본인부담 |         | ③ 전액본인부담금 |       |
|     | ① 본인부담금 | ② 공단부담금 |           |       |

▶ 본인부담금 : 입원시 20% / 외래진료시(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병원 60%)

※ 전액본인부담금 : 급여항목이나 개인사정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보험료 체납(6회 이상)으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
- ▶ 학교폭력사건에서 가해자인 경우
-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 될 경우

○ 특히,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자 중 고령자 가구와 36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수도 상당함에 따라 전향적인 급여제한 완화가 필요

※ '18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세대)수는 19만2,000가구, 36개월 이상 장기체납가구(세대)수는 3만 가구로 급여제한으로 고령자 등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 '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자 급여제한 통지 가구(세대)수는 8만7,028 가구임

<최근 5년간 '70세 이상 고령자' 보험급여 제한 통지 건수 현황>

| 구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세대 | 87,028 | 15,718 | 15,492 | 26,636 | 13,475 | 15,705 |

□ 공단의 과도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방식이 민원발생 원인을 제공

- 국민권익위는 '08. 12월 '건강보험 급여제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이와 관련 주무부처에 권고한 바 있고 현재, 관계법령 미개정 상태로 확인

※ '07년 당시, 지역가입자 전체 가구 중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 된 가구 비중이 28%(209만 가구)에 달함

<'08.12월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 확대>

- ▶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급여제한을 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5항을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소관부처는 '08. 2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존 의료수급자 대상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

※ (개정이유)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목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액 등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613호)

- ▶ 연대납부의무 부담에 따른 **요양급여 제한**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적용
- ▶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는 **공단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대주나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시행**
-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경감**

-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세대분리를 신청하고, 의료비를 경감받았다 하더라도 실직이나 휴·폐업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체납자로 전락할 우려 상존

※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시 보험급여가 사후적으로 제한되고,  
1천만원 이상 장기체납시 사전적으로 급여가 제한

**<'19년도 회귀·난치성 질환자 중 차상위 미선정된 저소득층 세대수>**

(단위 : 세대, %)

| 전체 회귀·난치<br>급여자 | 회귀·난치급여자 중<br>차상위 아닌 세대(A) | 차상위 아닌 세대 중<br>월보험료 6만원 이하 세대(B) | 월보험료 6만원 이하<br>세대 비율(B/A) |
|-----------------|----------------------------|----------------------------------|---------------------------|
| 307,272         | 276,560                    | 99,703                           | <b>36.05</b>              |

- 최근까지 '건강보험 급여제한' 관련 개선대책이 미진한 상황에서  
생계형 저소득층 등의 급여제한 해제요청 관련민원이 지속 발생

※ 고액·장기체납자 중 생계형 저소득층에게 병원 이용시 사전적 급여제한은  
전 국민 사회보장보험 취지와 맞지 않음('20. 5월 전문가의견청취)

**<국민신문고 '급여 제한' 관련 민원신청 현황(건강보험공단 대상)>**

| 연도   | 계     | '18 | '19 | '20 | '21 | '22 |
|------|-------|-----|-----|-----|-----|-----|
| 민원건수 | 2,327 | 493 | 386 | 542 | 584 | 322 |



#### 4 저소득층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취소율 과다

##### □ 당초 취지와 달리 분할납부 유지조건이 체납자의 납부부담을 가중

○ 현재 건보료 체납자들 중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도 분할납부기간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체납자가 상당한 수준

- 일부 체납자들은 관계법령에 규정한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분할납부 유지요건 미충족으로 승인 취소율이 높은 실정

※ 전체체납가구의 약 24% 정도가 분할납부 신청·승인을 통해 이용하지만, 이중 약 70% 이상은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됨

##### <(참고)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에 따라 가입자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24회 이내(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분할납부를 승인**
-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및 취소현황('18~'22)>

(단위 : 천가구)

| 연도   | 전체 체납가구 | 분할납부 승인(A) | 분할납부 취소(B) | 취소율(%) |
|------|---------|------------|------------|--------|
| 계    | 5,508   | 3,034      | 1,887      | 62.2   |
| 2018 | 1,283   | 731        | 555        | 75.9   |
| 2019 | 1,193   | 720        | 409        | 56.8   |
| 2020 | 1,105   | 526        | 327        | 62.1   |
| 2021 | 999     | 565        | 299        | 53.0   |
| 2022 | 928     | 492        | 297        | 60.3   |

▶ 연도말 기준 건강보험 자격유지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누적현황)

- 특히,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체납자 상당수는 **취약계층**(월 보험료 5만원 이하)으로 확인

※ 분할납부 승인 취소시 정지되었던 ‘보험급여 제한’이 재개되고, 분할납부 기간동안 받은 보험급여를 소급하여 부담이득으로 징수

※ 월 납부보험료가 5만원 이하 취약계층 체납자는 전체가구의 47.5%(198가구)에 달함

**<2018년 분할납부 승인 취소 가구의 월 납부보험료 현황>**

(단위 : 천가구, %)

| 구분          | ~1만원         | ~3만원           | ~5만원           | ~8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20만원 초과      |
|-------------|--------------|----------------|----------------|----------------|---------------|----------------|---------------|--------------|
| 가구<br>(누적)  | 22<br>(22)   | 116<br>(138)   | 60<br>(198)    | 64<br>(262)    | 34<br>(296)   | 55<br>(351)    | 32<br>(383)   | 34<br>(417)  |
| 점유율<br>(누적) | 5.4<br>(5.4) | 27.8<br>(33.2) | 14.3<br>(47.5) | 15.3<br>(62.8) | 8.1<br>(70.9) | 13.3<br>(84.2) | 7.7<br>(91.9) | 8.1<br>(100) |

▶ 전체 체납가구 : 417천가구('19.2.19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

- 현재 분할납부 횟수는 **24회 이내**로 되어 있으나 **체납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횟수가 정해짐**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장기체납 중인 취약계층**은 분할보험료(연체금 포함)도 부담으로 작용

※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도 납부가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총체납액 1,000만원 (127~223개월 미납)을 24개월로 분할납부(**월 40만원 이상**)해야 함

**<(사례) 2019년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1000만원) 현황>**

(단위 : 만원)

| 성명  | 연령 | 사업자명 | 체납기간            | 총체납액  | 체납월수 |
|-----|----|------|-----------------|-------|------|
| 이봉* | 56 |      | 1998.02-2016.12 | 1,000 | 223  |
| 김후* | 58 |      | 2002.03-2016.12 | 1,000 | 170  |
| 이선* | 48 |      | 2002.08-2016.11 | 1,000 | 133  |
| 김창* | 54 |      | 2004.01-2015.06 | 1,001 | 127  |
| 송미* | 49 |      | 2002.09-2016.12 | 1,001 | 142  |
| 이행* | 56 |      | 2004.06-2016.07 | 1,001 | 131  |
| 백승* | 54 |      | 2003.02-2016.12 | 1,001 | 128  |

▶ 2019년 건강보험공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일부 발췌

※ 분할납부 횟수와 금액에 대한 기준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바, 월 고지 보험료 이상으로 분할납부를 승인하도록 되어있고 **월 고지 보험료 이하의 균등 분할이나 횟수 조정 규정은 없는 상태**

※ (예시) 월 보험료 10만원인 가입자가 6개월 체납시 6개월까지만 분할납부 가능, 당월 보험료(10만원)에 분할보험료(10만원)을 합하여 6개월간 20만원씩 분납(36개월 체납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 이로 인해 장기체납 중인 취약계층은 분할납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체납과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실정
- 현재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 근거규정이 '06년 '24회 이내'로 처음 도입된 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어**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소지 우려

※ '06.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신설

-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분할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없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체납자는 분할납부 재승인 받기가 어려운 실정**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취소 된 적이 있는 신청자의 분할납부 재승인하지 않음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 지침」 제12조(분할납부)

가) 제한 및 재승인 기준

- (1) 제한기준 : 취소일자가 '19. 10. 24. 이후인 건을 기준으로 1회분도 납부하지 않은 건 또는 분할납부 취소 횟수 2회 이상 내역 존재(단, 취소 사유가 미납 및 기타인 경우만 누적횟수에 포함)
- (2) 제한자 승인: 분할납부 재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미납횟수,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을 고려한 적정 금액을 납부하면 재승인 가능
- (3)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필요가 있을 경우 불승인 등록

※ 공단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이유로 생계형 취약계층의 건보료 장기 체납자(6개월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을 적용함으로써 압류 등 보험급여(병·의원 진료)를 제한

<참고>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사례('19. 2월)

- ▶ 현재 무직·일용직 상태로 월보험료는 5만원대 납부하고 있음. 현재 보험료 납부는 카드자동납부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 몇 개월분 보험료로 130만원 정도가 미납, **분납 납부를 신청한 적이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연체되어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고, 공단 담당자는 **전액 납부를 하여야 압류해제** 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과거, 권익위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기간 개선권고' 현재 미이행

- 국민권익위는 '16. 9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이와 관련 주무부처에 권고한 바 있고 현재, 관계법령 미개정 상태로 확인

<참고> '16. 9월 (권고 세부내용) 체납보험료 분할납부기간 체납자 선택방식 검토

-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시 분할납부기간을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24회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당월분 보험료를 제외한 분할보험료는 체납자가 선택한 분할납부기간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매월 부과하되, 분할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하여 장기 분할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납부부담도 완화

## □ '보험료 납부유예' 제도 미운영으로 납부의무자의 재기 의욕 상실

- 건강보험은 사업중단, 실직·휴직 등 생계유지기 곤란한 상황에 놓인 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 제도 미운영

※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거,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부의무자가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중단, 실직·휴직 중인 경우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운영

<참고>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①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 6. 생략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과거 주무부처에서 법적근거 없이 한시적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한 사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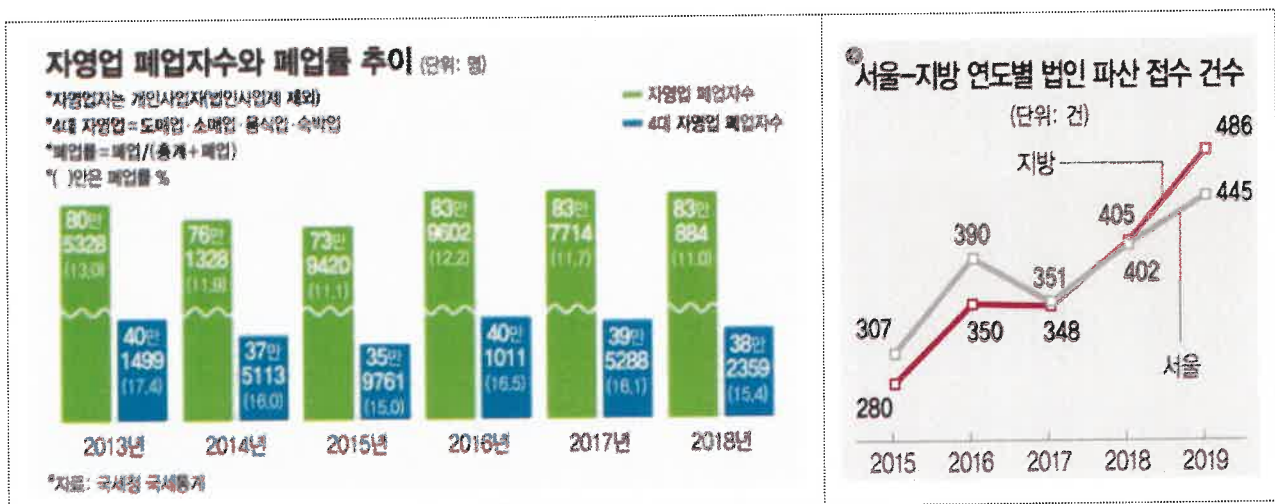
※ '05. 6. 2.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한시 지원대책 발표(보건복지부)

- ▶ (체납보험료 면제대상) ▲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 ▲ 전·월세가 농어촌은 2천9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 대도시 3천800만원 이하 ▲ 과표재산이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이하 ▲ 환가 가치가 없는 자동차 1대를 소지한 가구
- ▶ (체납보험료 납부유예) ▲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 최근 1년 이내에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을 당했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가입자 ▲ 재산이 경매·공매 진행 중이거나 재산가액의 80% 이상이 저당·압류 당한 가입자 등에 대하여 1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되, 한차례 연장
- ▶ 과세소득 500만원 미만, 전·월세금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경우 가산금 면제 등

-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위기, 부도·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보험료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법적 안정성** 도모 필요

※ '20. 4.17.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34만7,000명 보다 126만명 증가

※ 현재, 자영업(개인사업자) 폐업자수도 80만명 선을 유지하고, 법인사업자 파산 접수건수도 450건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



## □ 사업중단, 실직 등 일시적 체납자의 건강보험 경감제도 이용 제한

- 현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나 **수혜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경기불황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

※ 정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20. 3.30)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대상을 납부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감면**하도록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6호.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참고>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2020-74호(2020. 4. 9.)**

1. 세월호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상자 :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
2.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른 대상자 :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한 근로자 및 사용자 중 다음 각 호 해당조건 충족자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로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 해당요건 충족자**

**<참고>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사례('20. 3월)**

- ▶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자로 몇 년 전 거래처 부도로 인해 몇 천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도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 중임. 몇 년전 사업이 어려울 적에 보험료가 체납되어 금일 회사통장이 압류되었음. 압류된 통장이 회사통장이라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입금할 경우 그 대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음(현재 압류금액 800만원)

제가 거래처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이야기 하면 거래처가 이해해줄까요? 현재 돈을 융통할 곳도 없고, **작년에 건강보험료 통장압류를 해제하려고 거래처 대금인 150만원을 국민건강보험에 변제한 후 압류는 해제였으나 대신 거래처에 물품납품이 지연되어 거래처를 잃은 적이 있음.** 도와주세요!!!

## 6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협소

### □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제도의 제도적 한계 발생

- 현재, 관계법령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제도'를 시행 중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한 민원 사각지대 존재

#### <참고> 국민신문고 민원사례('20. 2월)

- ▶ 신청인은 현재, 미성년인 조카 두 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후견인**으로 큰조카는 고1, 작은 조카는 중2가 됨. 아이들이 7세, 5세 때 부모가 이혼하고 오빠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다 작년10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음.

아이들을 위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여러 일을 대행해 오다 '**지역의료보험 미성년자 연대납부면제**' 제도를 알게 되었음. 당연히 소득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아이들이 대상자일 줄 알았으나, **서류상 어머니 존재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 아이들에게는 오빠가 유산으로 남긴 ○○도 ○○리 소재의 땅이 전부이고, 그 땅도 매매를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매수인이 없어 현재는 무용지물인 상태임

이전에도 **지역 보험지사를 방문해서 아이들 사정을 말씀드렸으나 땅이 재산으로 있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안내만 받았음**.

서류상 엄마인 제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아이들의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할까요? 소득도 없는 제가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납부의무가 있는 건가요?

####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시행령 제46조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

- ▶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 건보공단은 해당 민원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곤란하다는 입장

※ (민원 답변) 귀하의 조카들이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납부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가정위탁아동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하고 있으나 연락두절로 버려진 경우 대부분

☞ 가정위탁보호 :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가정(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아동복지법 제3조, 제15조 제1항)

※ '19년 4월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일반가정 위탁아동 43명 중 3년 이상 및 10년 초과 아동이 전체의 74.4%(32명)에 달함('19.4월 위원회 실태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가정 위탁아동' 실태조사 현황('18년 기준)>

| 위탁가정 | 위탁아동 | 친부모 연락두절 아동 | 위탁기간                                                                       | 위탁사유                                                              |
|------|------|-------------|----------------------------------------------------------------------------|-------------------------------------------------------------------|
| 33명  | 43명  | 29명         | 10년 초과 : 11명<br>7 ~ 10년 : 10명<br>5 ~ 7년 : 6명<br>3 ~ 5년 : 5명<br>3년 미만 : 11명 | 이혼·재혼 : 12명<br>학대·방임·가출 : 11명<br>미혼모 : 7명<br>시설의뢰 : 5명<br>기타 : 8명 |

## □ 미성년자 외에 고령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

- 또한 미성년자 외에 근로능력이나 경제적이 부족한 고령자의 경우 연대납부 의무로 체납 채무를 부담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

※ '18. 12월 기준,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175만명(전체인구 5,183만명)으로 3.4% 수준(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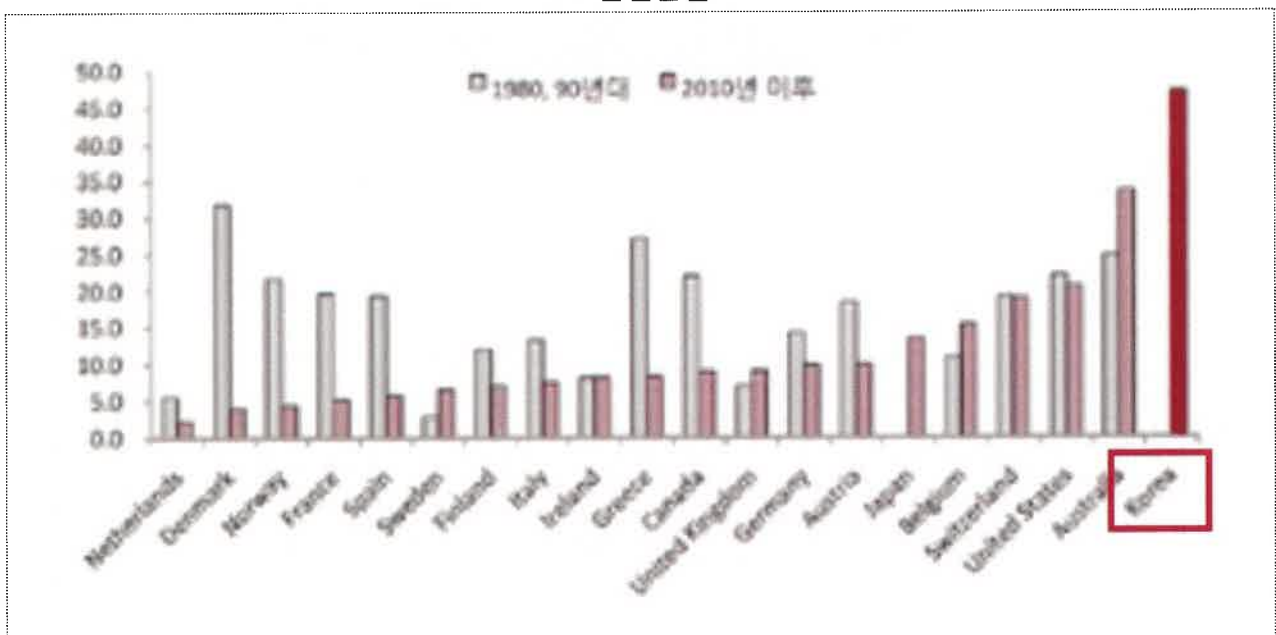
- 특히,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80대 이상 고령자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8. 12월 기준,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1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7만여명 수준 (건강보험공단 자료)

-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인 점을 감안할 경우 세대주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고령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 '15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청·장년에 비해 5.4배 높은 수준을 나타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발췌)

<노인빈곤율>



▶ 출처 : LIS(Access key workbook, [www.lisdatacenter.org](http://www.lisdatacenter.org), 2018. 9.4

## 7 납부의무자에 대한 각종 중요정보의 제공방식 미비

### 가.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 중요정보 통지 소홀

- 공단이 IT 기술발전과 모바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변동시 전통적인 통보방식만을 여전히 사용

※ 공단은 그동안 가입자의 ‘자격사항 변동내용’ 안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 등의 납입고지)에 의거, 문서 또는 전자문서(신청자에 한함)로 안내

####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 ① 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 저소득 취약계층(월 보험료 5만원 미만) 세대의 경우는 생계에 매달리는 관계로 전자고지 신청률이 일반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438만2천세대)의 **전자고지 신청률은 11.6%(51만세대)에 불과**

#### <전자고지 신청률 현황(23. 4월 기준)>

(단위 : 천 세대, %)

| 저소득 세대수<br>(월 보험료 5만원 미만) | 저소득 세대 중<br>전자고지 신청 세대수 | 신청률(%)      |
|---------------------------|-------------------------|-------------|
| 4,382                     | 510                     | <b>11.6</b> |

-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사항 변동내용’ 고지와 관련하여  
근거조항도 ‘19. 1월에 신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자격취득·변동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규칙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의 고지사항)

▶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본조신설 2019. 6. 12.]

※ (참고)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업무지침(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자격변동확인·통지 관련 업무개선)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상실·취득의 경우 익일에 휴대전화 문자(SMS)로 안내하고, 자격취득 처리 후 ‘지역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이메일, 모바일 통지(MMS) 또는 우편발송으로 안내

- 가입자의 자격사항 변동내용 통보는 체납시 부과되는 제재처분이 강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나 여전히 개선에 소극적

※ 체납시 제재처분 : 급여의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연체금 부과, 압류 등

- 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미통지 이의’ 내용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유발

※ (의결사항) 2019. 7. 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시 변동내용을 휴대전화 문자(SMS) 등을 통해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함



<참고> 고충민원 사례('19년 5월)

- ▶ 신청인은 2018년 10월 직장을 퇴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으나 이를 피신청인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해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던 것을 모르고 7개월이 지났음.

2019년 5월, 피신청인이 2018년 11월분부터 2019년 5월분까지 미납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미납보험료의 납부면제와 자격변동시 변동내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

<참고> 고충민원 사례('21년 1월)

- ▶ 저는 아들의 직장건강보험료로 납부하여 왔으나, '20년 5월 임대소득 신고로 지역건강보험의 자격이 변동된 사람임. 그런데 자격변동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이 없던 차에 '20년 12.31. 15시경 납부고지서가 도착하였고, 40만원 가량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음.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고지되었기에 공단 콜센터에 항의하니 ○○지부를 안내받아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아들에게 통지하였으니, 공단에서는 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무조건 납부하라는 통명한 답변뿐이었음.

저는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통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새로이 큰 금액을 부담하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를 안내해 주도록 요청

<참고> 고충민원 사례('22년 3월)

- ▶ (민원내용) 공단에서 자동이체 해지와 관련하여 문자나 이메일 한번 없이 직권으로 해지함. 다른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해 주고 있음

1월 우편물 고지서를 본적이 없고, 제가 주소를 변경한 이후에도 과거 주소로 보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공단의 주장대로 자동이체는 약관 제9조에 의거해서 자동이체 해지했다고 치더라도 우편물 고지는 주거지 변경 이후임에도 우편물을 이사 전 주소로 발송하여 체납되고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함

- ▶ (민원답변) ① 공단의 자동이체 직권해지와 이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아 고객님의 불편을 드려 죄송함. 앞서 공단은 계좌 자동이체 거래약관 제9조에 따라 자격상실시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공단이 직권 해지함

② 고객님의 경우, 1월 정기보험료 고지서 작업(매달 1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후 전입일자 신고(1월 25일)가 된 상태로 부득이하게 기존 주소로 1월 정기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납부하신 연체금은 환급해 드릴 예정이고, 고객님의 제안하신 자동이체 상실 직권해지에 대한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요청과 관련하여 깊이 공감하며,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활용한 안내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음

## 나. 가입자의 중요정보 알권리 및 편의성을 제한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정보 미제공**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는 ① 소득 ② 재산 ③ 자동차의 부과점수만 제공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고지서의 제공정보 현황>

| 보험료 산정 안내                        |  | 전 월      |  | 당 월        |  | 구 분                           |  | 전 월      |  | 당 월      |                            |
|----------------------------------|--|----------|--|------------|--|-------------------------------|--|----------|--|----------|----------------------------|
| ① 소 득                            |  | 416점     |  | 236.632점   |  | ⑦ 경 감 · 정 지 (-)               |  | 0원       |  | 0원       |                            |
| ② 재 산 (건물토지전월세)                  |  | 1,041점   |  | 1,001점     |  | ⑧ 한시적 감액 (-)                  |  | 0원       |  | 0원       |                            |
| ③ 자 동 차                          |  | 0점       |  | 0점         |  | ⑨ 면제 · 지원금 (-)                |  | 0원       |  | 0원       |                            |
| ④ 합 계 (① + ② + ③)                |  | 1,457점   |  | 1,237.632점 |  | ⑩ 증 가 금 액 (+)                 |  | 0원       |  | 0원       |                            |
| ⑤ 소득최저보험료                        |  | 0원       |  | 0원         |  | ⑪ 납부할금액 등 (-)                 |  | 0원       |  | 0원       |                            |
| ⑥ 건강보험료 (④ × 205.3원) + ⑤         |  | 299,120원 |  | 254,080원   |  | ⑫ 자동차세감액 (-)                  |  | 200원     |  | 200원     |                            |
| ⑦ 장기요양 보험료 (④ × 205.3원) × 12.27% |  | 36,700원  |  | 31,170원    |  | ⑬ 납부할 보험료 (⑥ - ⑦ - ⑧ + ⑨ - ⑩) |  | 298,920원 |  | 253,880원 |                            |
| ⑧ 경감 면제 지원금 (-)                  |  | 0원       |  | 0원         |  | ⑭ 납부할 금액 등 (-)                |  | 0원       |  | 0원       |                            |
| ⑨ 증 가 금 액 (+)                    |  | 0원       |  | 0원         |  | ⑮ 납부할 보험료 (⑬ - ⑭ + ⑥ - ⑦)     |  | 36,700원  |  | 31,170원  |                            |
| ⑩ 납부할 보험료 (⑥ - ⑦ - ⑧ + ⑨ - ⑩)    |  |          |  |            |  | ⑯ 총 납부할 보험료 (⑬ + ⑮)           |  | 335,620원 |  | 285,050원 |                            |
| ⑪ 납부할 금액 등 (-)                   |  |          |  |            |  | 변 동 세 부 내 역                   |  |          |  |          |                            |
| ⑫ 자동차세감액 (-)                     |  |          |  |            |  | 1 소득징률                        |  |          |  |          | 22.9월 부터 소득징률제 적용          |
| ⑬ 납부할 보험료 (⑥ - ⑦ - ⑧ + ⑨ - ⑩)    |  |          |  |            |  | 2 재산공제                        |  |          |  |          | 22.9월 부터 재산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

- 이로 인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자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았으나 상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민원을 유발

### <참고> 고충민원 사례('19년 2월)

- ▶ 신청인은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소득·재산·자동차의 점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각의 금액을 알 수 없어, 별도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았으나 역시 동일하게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알 수 없었음.**

이 민원확인서에도 본인의 소득·재산·자동차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하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확인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

**<참고> 고충민원 사례('19년 2월)**

- ▶ 신청인은 지역가입자인데 재산등급에 점수가 757점으로 부과되었음. **그 내역을 상세히 알고 싶다고 하였는데(자택 공시가격 얼마 몇 점, 상가 공시가격 얼마 몇 점 등)공단 상담원이 알려 줄 수 없다고 함**

보험료 내는 당사자에게 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을 알려 줄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으니,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함**

**<참고> 고충민원 사례('20년 5월)**

- ▶ (민원내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러 갔는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함. 이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가 건강보험공단에 가야만 땔 수 있는 서류인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변경하기를 요청함**

- ▶ (민원답변) 소득, 재산 등 부과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69조의 2(제공 요청 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건강보험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사용을 조건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임

부과내역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부과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상의 부과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표기한 자료임

**부과내역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자료 유출시 개인의 이익에 침해를 가할 수 있어, 방문민원에 한해 본인여부 확인 후 발급**해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고충민원 사례('22년 1월)**

- ▶ 신청인은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부과(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관련 371점 /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등 관련 412점) 상세내역 세부자료를 메일로 요청하였으나 방문하여 발급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니,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요청함**

**<참고> 고충민원 사례('22년 3월)**

- ▶ (민원내용) 건강보험료 점수 산정내역 정보 공개를 요구함. 받은 서류는 단지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이며 재산세 항목에 대한 주택과 토지 재산금액만 나와 있음. 재산항목에 대한 각각 점수 및 각 점수 산정방식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되고 있지 않음

담당자는 본인 모니터 화면을 종이로 출력하여 보여주긴 하였지만 제공은 불가하다고 하니, **주택 및 토지의 각각의 점수와 산정내역 자료를 요구함**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의 소득항목의 '종합'란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산항목의 '과표재산'란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세부금액이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자동차의 경우도 몇 대인지 확인 곤란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2023년도 실제 발급용

( 발급용 )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번호 : 0067-20230503

|           |             |           |               |
|-----------|-------------|-----------|---------------|
| 사 용 용 도   | 학교재출용       | 확 인 요 청 일 | 2023년 05월 03일 |
| 증 번 호     | 13015903104 | 부 과 년 월   | 2023년 03월분    |
| 확 인 청 구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 관계       |
|           |             | *****     | 본인            |

### 보 험 료 부 과 내 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득 금 액 (만 원) |              |      |       |    | 재 산 금 액 (만 원) |    |              |     | 자 동 차<br>(대 수) |
|----------|--------|---------------|--------------|------|-------|----|---------------|----|--------------|-----|----------------|
|          |        | 종합            | 분리과세<br>주택임대 | 연금   | 근로    | 영업 | 건물            | 주택 | 토지<br>(선박항공) | 전월세 |                |
|          | *****  | 170           | -            | -    | -     | -  | 6,390         | -  | -            | -   |                |
|          | *****  |               |              | 이하민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요소별 점수 |        | 0             |              |      |       |    | 97            |    |              |     | 0              |

(합 계: 45,110원) = (건강보험료: 39,990원) + (장기요양보험료: 5,120원)

(건강보험료: 39,990원) = (산정보험료: 39,990원) - (경감금액: 0원)

(장기요양보험료: 5,120원) = (산정보험료: 5,120원) - (경감금액: 0원)

동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영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발급목적외 타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단에는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과요소별 점수 및 보험료는 전체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산한 내역이나, 일부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주 1. 소 득 평 가 : 조합소득 = 100%, 연금·근로소득 = 50%(2022. 8. 이전에는 30%)
2. 산정보험료 = (부과요소별 점수합계 × 점수당 금액) + 소득 최저보험료
3. 위 보험료는 가입자의 취득, 상실 또는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이 민원확인서의 '구체적 내용 명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

- 해당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직접 발급

※ 지역가입자가 이 민원확인서를 발급받는 목적이 '보험료 납부고지서'상의 부과금액 적절성 확인인 만큼 중요정보 제공은 필요('20. 5월 관계자 의견청취)

<참고> 고충민원 의결사례(2018. 6. 4.)

▶ 두 대의 자동차 중 한 대를 매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에 자동차의 점수만 표기되고 '대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매도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년간 보험료가 부과된 사실도 모른 채 보험료를 납부함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건보공단)에게 지역가입자에게 과오납 보험료 환급할 것을 의결

- 지역가입자의 '중요정보에 대한 알권리' 충족 필요성이 큰 만큼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논리보다 우선할 필요

※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민간보험사 청약서류·보험증권 등은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넣어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경우 부양가족의 제공동의를 거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청약서류\_다이렉트자동차\_20230329225123370.pdf

이 PDF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려면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암호

취소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조회

제공동의원활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클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분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문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팩스번호 : 1544-7020

#### 세무서방문 신청

##### [청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이람?]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

#### 본인인증수단

##### 1.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 성명

※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2.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 성명

※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관계

은(는) 의 선택 입니다.

\* 동의범위

2022년 부터 이후연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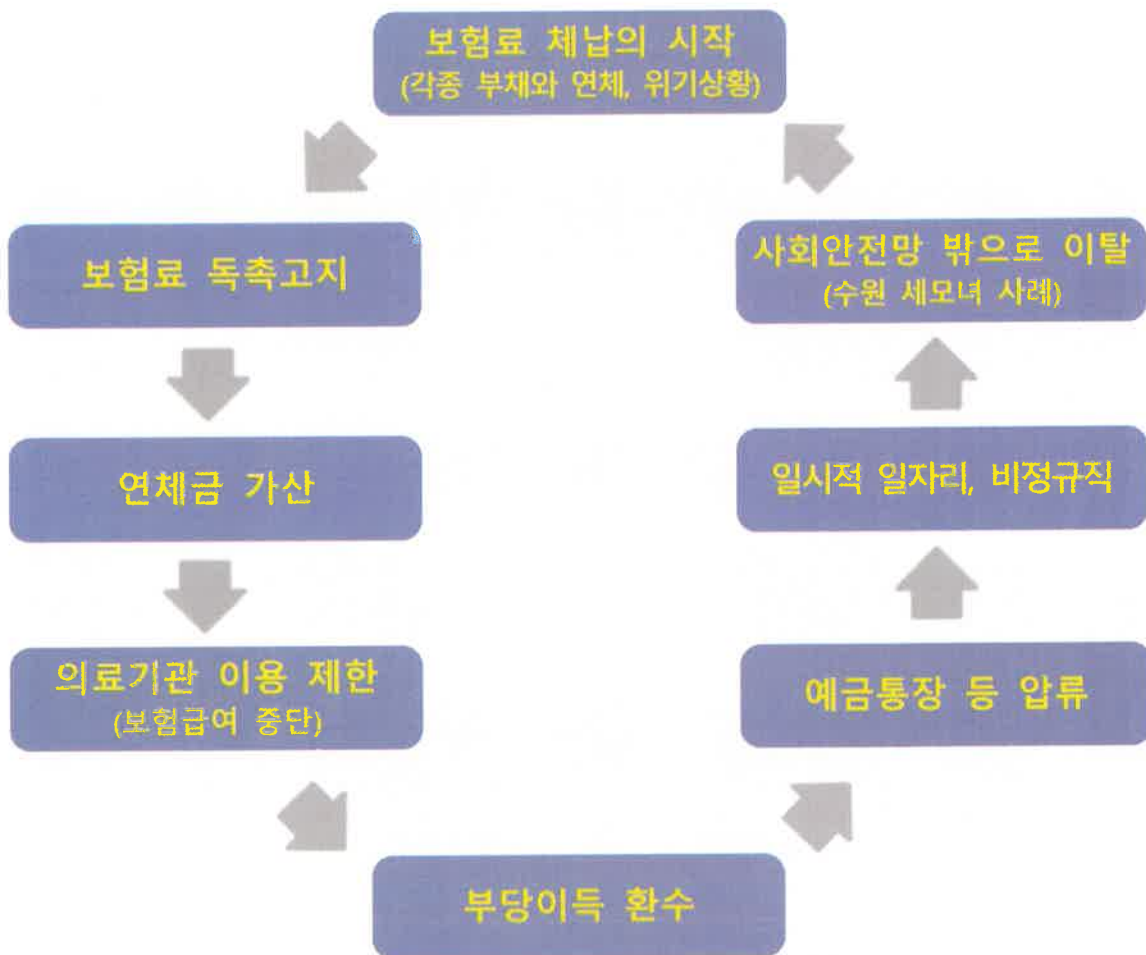
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기본방향】

- 코로나19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독촉고지,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구조

※ '22년 7월, 건보료 체납현황(연소득 100만원 이하) : 세대수 64만8,478세대



##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의 악순환 고리】

-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빈발민원 이유를 분석, 저소득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하고자 함

##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 <b>1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b><br>* '22년 7월, 건보료 체납현황(연소득 100만원 이하) : 세대수 64만8,478세대 / 체납액 9,073억 4,526만원     | ○ (중장기) 국민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br>○ (중장기) 국민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
| <b>2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b><br>* 압류예정통보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 본인도 모르는 채 '압류금지 소액예금 통장'조차 압류되어 경제활동 불가능(일용노임 인출 곤란 등)  | ○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압류 전 휴대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 불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b>전화통화·문자전송 안내 의무화</b><br>○ 압류 전, 체납자 소명 사실 등 확인 사항 기록관리                                     |
| <b>3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규정 개선</b><br>* 보험료가 체납(6회)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                                     | ○ (1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br>○ (2안)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체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b>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b>                                              |
| <b>4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b><br>* 분할납부(24회 이내) 기간내 보험료를 5회 이상 납부할 수 없는 체납자 상당수 존재                                |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를 <b>48회 이내로 완화</b><br>○ 분할납부 승인취소자의 재승인 기준 완화                                                                                          |
| <b>5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 신설</b><br>*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신청 제도 운영                                          | ○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 <b>일정기간 체납처분 유예</b> ' 근거규정 마련                                                                  |
| <b>6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b><br>* 건보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협소, 미성년의 경우 편(부)모 가정위탁아동 등과 근로능력 또는 경제력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은 제외 | ○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등 <b>자격요건 폐지</b><br>○ (중장기) 저소득 취약계층 해당하는 <b>8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b> 등을 '연대납부 면제대상'에 포함                           |
| <b>7 수요자 중심의 중요정보 제공방식 다양화</b><br>* 가입자의 '자격사항 변동내용' 고지방식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만 안내,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상세정보 미제공 등                 | ○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의 통지방식을 문자 전송, 전화통화, 카카오톡(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 강화<br>○ 보험료 산정 관련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 세대원 정보제공 동의절차 마련<br>○ 인터넷·모바일앱 등으로 확인방식 다양화 |

## 1 저소득 빈곤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 【중장기】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주거·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동일하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예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 1월)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4. 1월)
-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5.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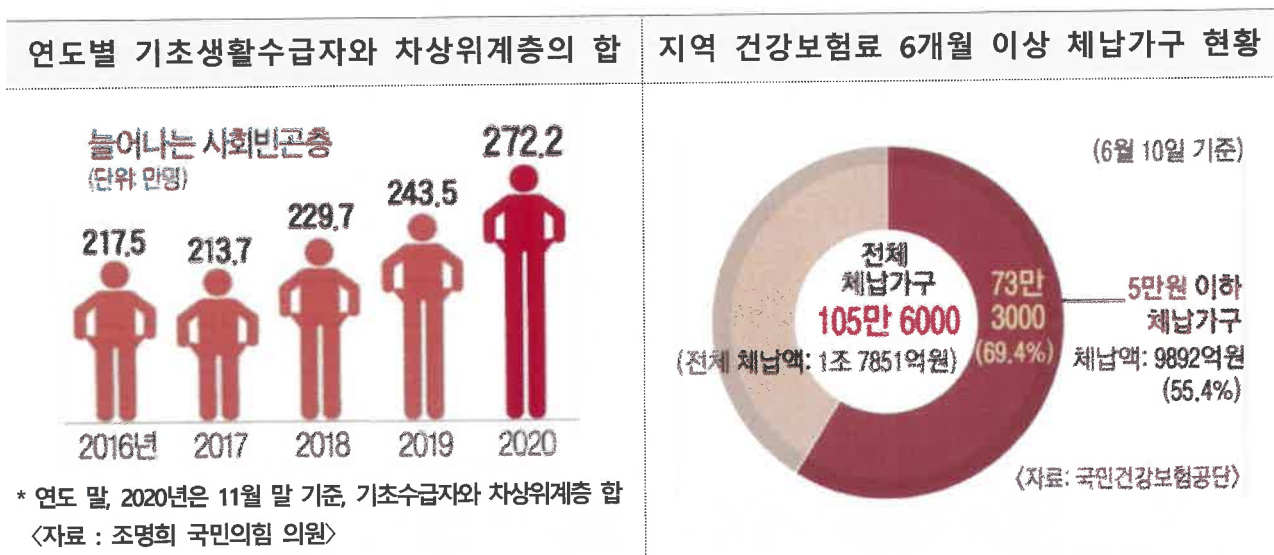
### □ 【중장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중 **본인부담 경감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예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선정기준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6. 1월)**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



【(참고) 2023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중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폐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기준 미적용)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가 1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나목)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2 공단의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 개선

### 【1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개선안

#### □ 저소득 취약계층의 체납 관련 압류처분 통보·안내 강화

- 생계형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전, 휴대폰 번호 확인을 통해 압류처분 불이익,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문자전송·전화통화 등 안내 의무화

※ 문자전송(카톡알림톡 포함) 및 전화통화 안내를 해야 할 취약계층의 대상범위는 월보험료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되, **취약계층의 체납처분 통보서를 발송할 때는 별도로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개정

#### □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압류 전 통보내용 등 기록관리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예시 : 월평균보험료 5만원 내외)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전, 체납자의 압류처분 불이익 또는 소명 사실 등을 기록 관리하는 근거 마련

※ 건강보험공단이 압류처분 전, 전화통화·문자전송 등을 통해 압류처분의 불이익, 분할납부 등을 안내한 사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

⇒ 건강보험공단 내규에 '생계형 체납자의 압류 전 전화통화·문자전송 안내사실 기록관리' 근거규정 마련

## 【2안】 모든 장기체납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개선안

-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전, 휴대폰 번호 확인을 통해 압류처분 불이익,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문자전송·전화통화 등 안내 의무화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할 때는 별도로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강보험공단의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의 요건' 완화

-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 임의해제 요건으로 규정된 '체납액의 일부 납부·충당' 금액을 건보료 체납기간, 체납금액에 따라 완화

※ (예시) 건강보험료 체납액 규모에 따라 일부 납부금액 기준을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나머지 체납액의 경우 납부 가능한 수준으로 분할납부 허용

⇒ 건강보험공단 내규 관련 '체납자의 압류해제 요건' 개정



### 3 건강보험(의무가입)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 □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 【1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 건강보험(의무가입)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적용 금지

※ (참고) 일반체납자와 저소득(취약계층) 체납자를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예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기준 선정시 고려사항

- ▶ 1억원 규모의 주택보유 세대 중 저소득 취약계층 포함될 가능성 검토
-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급성질환자, 임산부 등 필수적 의료가 필요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개정

#### 【2안】 장기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전면 폐지

※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보장해 줌으로써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음

▶ 【참고】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할 때 보험급여를 제한하였으나 '16년 6월부터 장기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개정

【대만의 '全民健康保險' 및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별 특징 비교】

| 구 분          | 대만 '全民健康保險'                                                                                                              | 한국 '국민건강보험'                                                                            |
|--------------|--------------------------------------------------------------------------------------------------------------------------|----------------------------------------------------------------------------------------|
| 운영방식         | ○ 사회보험(의무가입)                                                                                                             | ○ 사회보험(의무가입)                                                                           |
| 징수율          | ○ 97% ~ 99%                                                                                                              | ○ 99.4%('21년 기준)                                                                       |
| 체납자 규모       | ○ 전체인구의 약 3.5%                                                                                                           | ○ 체납액 1조7,025억원(99.3만가구)                                                               |
| 보험료 지원       | ○ 빈곤층, 차상위계층,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14년 304만명, 239억대만달러)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에 의거, 경감대상을 명시                                              |
| 대출제도         | ○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 무이자 대출<br>* 빈곤퇴치기금에서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 지원<br>* '14년도 3,045건(1억9천만대만달러)                              | ○ 없음                                                                                   |
| 분할납부         | ○ <b>2~48회</b>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 ○ <b>24회</b> 이내                                                                        |
| 민간자선 지원      | ○ 체납자 부담능력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복지기관 또는 자선기관에 체납자 지원을 요청                                                             | ○ 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 제정, 지원기관(민간기업·사회단체) 협약체결을 통해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대납지원 사업('22년 29만2,162세대 186억 지원) |
| 긴급지원         | ○ 보험급여가 정지되었더라도 의사가 입원, 응급의료, 필수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동시에 체납보험료 해결                                                    |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등 해당요건 충족자에 한해 한시적 지원                             |
| 복권기금 지원      |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복권기금에서 체납보험료와 의료비 지원                                                                              | ○ 없음                                                                                   |
| 결손처분         | ○ 있음                                                                                                                     |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                                                                 |
| 취약계층 의료혜택 보장 |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차상위계층, 특수가정상황 아동(한부모가정, 사별, 이혼,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배우자 형무소 복역중인 자, 비자발적 실업가정 등), <b>체납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 보장</b> | ○ ①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②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 ③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b>보험료 납부의무 제외</b>          |
| 급여정지         | ○ <b>2016년 6월 보험급여 제한제도 폐지</b>                                                                                           | ○ 있음(건강보험료 <b>6회 이상 체납시 보험급여 제한</b> )                                                  |

## 4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 및 재승인 근거규정 완화

### □ 장기체납자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규정 완화

- 최근 소득 양극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자의 납부의지와 실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

※ (참고) 2019. 8.2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취소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권고를 결정

※ **당월분 보험료를 제외한 분할보험료(연체금 포함)는 체납자가 선택한 분할 납부기간(48회 이내)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납부의지를 고취시키고 납부부담도 완화할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항 개정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 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장기체납자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재승인 규정 완화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신청자의 분할납부 재승인 기준을 완화

⇒ 건강보험공단 내규 관련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조항' 개정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건강보험의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규정 도입

### □ 지역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근거규정 명문화

-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체납처분 유예'하는 방안 마련

※ **체납자 지위 변동의 다양성 고려** : ① 사업장 부도로 인해 사업주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되는 경우 ② 사업주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자격 사이를 넘나들며 사업주 자격에서 발생한 고액체납자이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생계형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 등 다양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자는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농어민의 경우 「농어촌복지법」에 근거, 전염병에 따른 가축 집단폐사, 농산물 가격폭락,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발생시 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에 '납부유예 등의 요건' 근거규정 신설

### □ 【중장기】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 지역가입자가 체납액을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체납처분 유예' 근거 규정 도입

<참고>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

☞ 제15조 제1항 해당사유

-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참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 6. 생략

<참고>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①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 6. 생략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 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 8.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② **법 제24조의3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6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 □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전체 미성년자로 대상범위 확대

#### ○ 현재의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의 요건을 폐지

※ 아르바이트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거나 부모 모두 사망하였으나 상속받은 땅이 가치가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나 **미성년자 면제대상에서 제외**

※ (참고)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면제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07.22.)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개정

<현재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46조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

- ▶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 □ 【중장기】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확대

#### ○ 한국이 '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을 '80세 이상'의 고령자 포함할 필요

※ 국민건강보험 체납채무로 인한 고령자(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여제한을 방지함으로써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을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에 포함**

※ 장애인, 임산부 등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 규정 마련

※ (참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연대납부의무를 면제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1.08.27.)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신설

## 7 납부의무자에 대한 각종 중요정보 제공 다양성 강화

### □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 중요정보 통지 강화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의 통지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카카오톡(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

※ (참고)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업무지침(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자격변동 확인·통지 관련 업무개선)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상실·취득의 경우 익일에 휴대전화 문자(SMS)로 안내하고, 자격취득 처리 후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확인통지서'를 이메일, 모바일 통지(MMS) 또는 우편발송으로 안내

⇒ 건강보험공단 내규 관련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 통지' 신설

### □ 가입자의 중요정보 알권리 및 편의성 강화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세부항목을 구체화하고, 세대원의 소득, 재산 관련 정보제공 동의 절차 마련

- 소득항목의 '종합'란에 해당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을 명시

- 재산항목의 '과표재산'란을 토지·주택·건축물 등으로 분류하여 명시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방문 신청 외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본인확인 비밀번호 부여)

※ 현재, 카카오톡 전자증명서의 경우 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만 가능

⇒ 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부과관리업무처리지침」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의 확인서 서식 및 발급·확인 방법 등' 개정

<(예시) 보험사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본인확인, 부양가족 정보제공 화면>

- ▶ 민간보험사 청약서류 및 보험증권 본인확인 이메일 발급 화면(비밀번호 부여)

청약서류\_다이렉트자동차\_20230329225123370.pdf

이 PDF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려면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암호

취소 확인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절차 화면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검색 전체메뉴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조회 제공동의연속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클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                                                                                                                                              |                                                                                                                            |                                                                                                                                        |                                                                                                                                  |                                                                                                                                                   |
|----------------------------------------------------------------------------------------------------------------------------------------------|----------------------------------------------------------------------------------------------------------------------------|----------------------------------------------------------------------------------------------------------------------------------------|----------------------------------------------------------------------------------------------------------------------------------|---------------------------------------------------------------------------------------------------------------------------------------------------|
| <p><b>본인인증 신청</b></p> <p>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분카드, 하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p> <p><b>[인증서]</b><br/>- 공통인증서, 간편인증</p> | <p><b>미성년자녀 신청</b></p> <p>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p> <p><b>[인증서]</b><br/>- 공통인증서, 간편인증</p> | <p><b>온라인 신청</b></p> <p>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br/>(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p> | <p><b>팩스 신청</b></p> <p>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br/>팩스번호 : 1544-7020</p> | <p><b>세무서방문 신청</b></p> <p><b>[첨부서류]</b><br/>본인신청 : 신분증<br/>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br/><b>[신청인여관?]</b><br/>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p> |
|----------------------------------------------------------------------------------------------------------------------------------------------|----------------------------------------------------------------------------------------------------------------------------|----------------------------------------------------------------------------------------------------------------------------------------|----------------------------------------------------------------------------------------------------------------------------------|---------------------------------------------------------------------------------------------------------------------------------------------------|

● 본인인증수단

●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성명 ※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성명 ※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관계 은(는) 의 선택 입니다.

동의방위 2022년 부터 이후연도 자료

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예시)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신청란>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 구분                                     | 권익위 개선방안                                                                                                                                                                                                                                                                                                                                                                                                                                                                                                                                                                                                                                   | 조치기한                  |
|----------------------------------------|--------------------------------------------------------------------------------------------------------------------------------------------------------------------------------------------------------------------------------------------------------------------------------------------------------------------------------------------------------------------------------------------------------------------------------------------------------------------------------------------------------------------------------------------------------------------------------------------------------------------------------------------|-----------------------|
| ①<br>저소득 취약계층<br>의료보장 서비스<br>사각지대 해소   | <p>□ 【중장기】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p> <p>◦ 교육·주거·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동일하게 <b>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b></p> <p>※ 【예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p> <p>▶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 1월)</p> <p>▶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4. 1월)</p> <p>▶ <b>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b></p> <p>□ 【중장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p> <p>◦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중 <b>본인부담 경감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b></p> <p>※ 【예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선정기준</p> <p>▶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p> <p>▶ <b>부양의무자 기준 폐지</b></p>                                                                                           | <p>중장기</p> <p>중장기</p> |
| ②<br>공단의 예금채권<br>‘포괄적 압류처분<br>업무 관행 개선 | <p><b>【1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개선안</b></p> <p>□ 저소득 취약계층의 체납 관련 압류처분 통보·안내 강화</p> <p>◦ 생계형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해서 <b>압류 전, 휴대폰 번호 확인을 통해 압류처분 불이익,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문자전송·전화통화 등 안내 의무화</b></p> <p>※ <b>문자전송(카톡알림톡 포함) 및 전화통화 안내</b>를 해야 할 취약계층의 대상범위는 월보험료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p> <p>&lt;예시&gt;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p>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되, <b>취약계층의 체납처분 통보서를 발송할 때는 별도로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b>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24.11월               |

| 구분                                                | 권익위 개선방안                                                                                                                                                                                                                                                                                                                                                                                                                                                                                                                                                                                                                                                                                                                                                                                                                              | 조치기한           |
|---------------------------------------------------|---------------------------------------------------------------------------------------------------------------------------------------------------------------------------------------------------------------------------------------------------------------------------------------------------------------------------------------------------------------------------------------------------------------------------------------------------------------------------------------------------------------------------------------------------------------------------------------------------------------------------------------------------------------------------------------------------------------------------------------------------------------------------------------------------------------------------------------|----------------|
| <p>②<br/>공단의 예금채권<br/>'포괄적 압류처분'<br/>업무 관행 개선</p> | <p>□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압류 전 통보내용 등 기록관리 강화</p> <p>◦ 생계형 취약계층 체납자(예시 : 월평균보험료 5만원 내외)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전, 체납자의 압류처분 불이익 또는 소명 사실 등을 기록 관리하는 근거 마련</p> <p>※ 건강보험공단이 압류처분 전, 체납자에게 전화통화·문자전송 등을 통해 압류처분의 불이익, 분할납부 등을 안내한 사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p> <p>⇒ 건강보험공단 내규에 '생계형 체납자의 압류 전 전화통화·문자전송 안내사실 기록관리' 근거규정 마련</p> <p><b>【2안】 모든 장기체납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개선안</b></p> <p>◦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전, 휴대폰 번호 확인을 통해 압류처분 불이익,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문자전송·전화통화 등 안내 의무화</p> <p>&lt;예시&gt;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p>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할 때는 별도로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개정</p> | <p>'24.11월</p> |
|                                                   | <p>□ 건강보험공단의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의 요건' 완화</p> <p>◦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 임의해제 요건으로 규정된 '체납액의 일부 납부·충당' 금액을 건보료 체납기간, 체납금액에 따라 완화</p> <p>※ (예시) 건강보험료 체납액 규모에 따라 일부 납부금액 기준을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나머지 체납액의 경우 납부 가능한 수준으로 분할납부 허용</p> <p>⇒ 건강보험공단 내규 관련 '체납자의 압류해제 요건' 개정</p>                                                                                                                                                                                                                                                                                                                                                                                                                                                                                                                                                                          | <p>'24.07월</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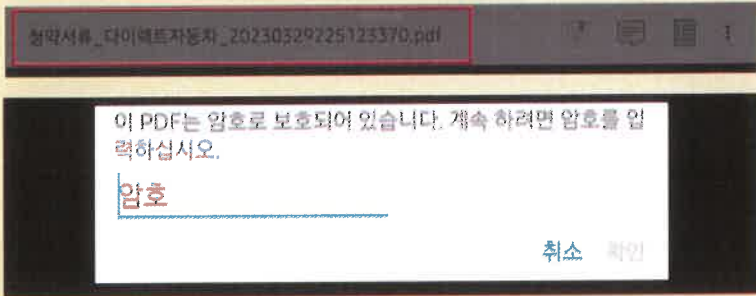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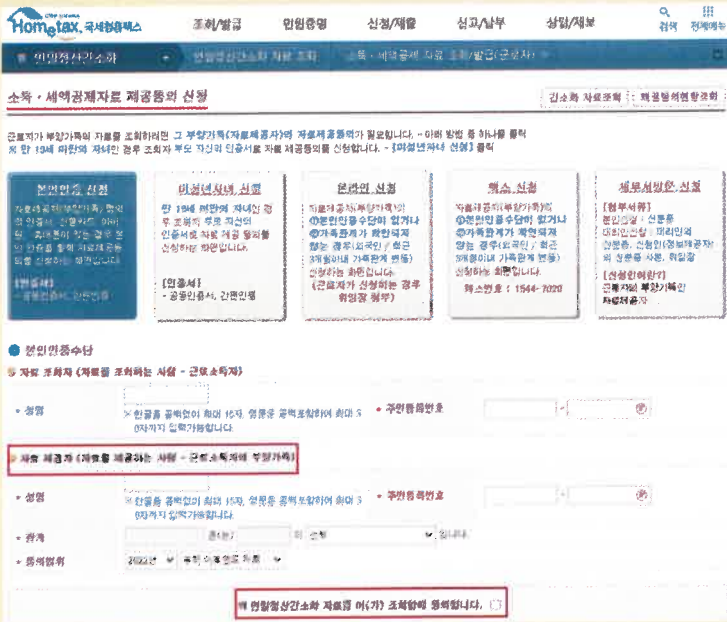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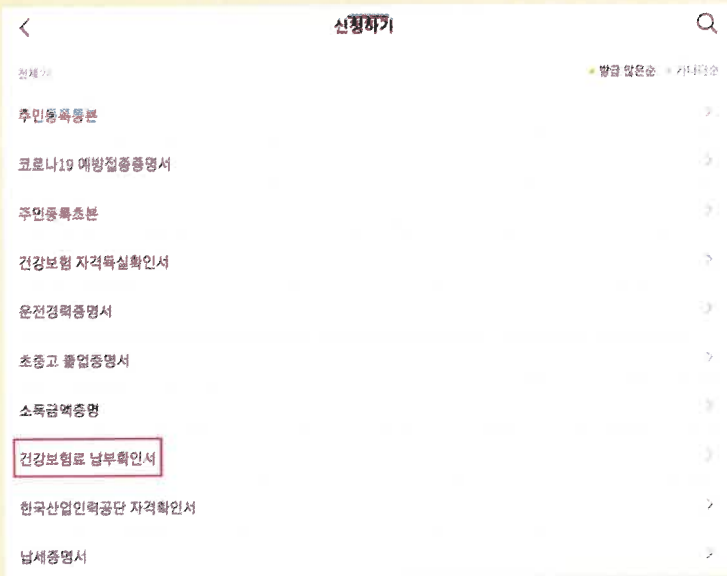


| 구분                                            | 권익위 개선방안                                                                                                                                                                                                                                                                                                                                                                                                                                                                                                                                                                                                                                                                                                                                                                                                                                                                  | 조치기한           |
|-----------------------------------------------|---------------------------------------------------------------------------------------------------------------------------------------------------------------------------------------------------------------------------------------------------------------------------------------------------------------------------------------------------------------------------------------------------------------------------------------------------------------------------------------------------------------------------------------------------------------------------------------------------------------------------------------------------------------------------------------------------------------------------------------------------------------------------------------------------------------------------------------------------------------------------|----------------|
| <p>③</p> <p>건강보험(의무가입)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p>     | <p>□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 규정 폐지</p> <p><b>【1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b></p> <p>◦ 건강보험(의무가입)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b>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b>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적용 금지</p> <p>※ (참고) 일반체납자와 저소득(취약계층) 체납자를 무 차르듯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필요</p> <p>※ (예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기준 선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원 규모의 주택보유 세대 중 저소득 취약계층 포함될 가능성 검토</li> <li>▶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급성질환자, 임산부 등 필수적 의료가 필요한 경우</li> </ul> <p>⇒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개정</p> <p><b>【2안】 장기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b></p> <p>◦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b>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전면 폐지</b></p> <p>※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보장해 줌으로써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음</p> <hr/> <p>▶ <b>【참고】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할 때 보험급여를 제한하였으나 '16년 6월부터 장기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보장</b></p> <hr/> <p>⇒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개정</p> | <p>'24.11월</p> |
| <p>④</p> <p>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 및 재승인 근거 규정 완화</p> | <p>□ 장기체납자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규정 완화</p> <p>◦ 최근 소득 양극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자의 <b>납부의지와 실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b></p> <p>※ (참고) 2019. 8.2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취소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p> <p>※ <b>당월분 보험료를 제외한 분할보험료(연체금 포함)는 체납자가 선택한 분할납부기간(48회 이내)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납부의지를 고취시키고 납부부담도 완화할 필요</b></p> <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항 개정</p>                                                                                                                                                                                                                                                                                                                                                                                                                                                                  | <p>'24.07월</p> |

| 구분                                            | 권익위 개선방안                                                                                                                                                                                                                                                                                                                                                                                                                                                                                                                                                                                                                                                                                                                                                                                                                                                                                                                                   | 조치기한           |
|-----------------------------------------------|--------------------------------------------------------------------------------------------------------------------------------------------------------------------------------------------------------------------------------------------------------------------------------------------------------------------------------------------------------------------------------------------------------------------------------------------------------------------------------------------------------------------------------------------------------------------------------------------------------------------------------------------------------------------------------------------------------------------------------------------------------------------------------------------------------------------------------------------------------------------------------------------------------------------------------------------|----------------|
| <p>④</p> <p>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 및 재승인 근거 규정 완화</p> | <p>&lt;참고&g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p> <p>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b>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b>,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hr/> <p>□ 장기체납자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재승인 규정 완화</p> <p>◦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신청자의 <b>분할납부 재승인 기준</b>을 완화</p> <p>⇒ 건강보험공단 내규 관련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조항' 개정</p> <hr/> <p>&lt;참고&g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p> <p>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b>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b></p>                                                                                                                                                                                                                                                                                                                                                                                                   | <p>'24.07월</p> |
| <p>⑤</p> <p>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유예' 근거규정 도입</p>      | <p>□ 지역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근거규정 명문화</p> <p>◦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b>3회 이상 체납한 때 '체납처분 유예'</b>하는 방안 도입</p> <p>※ <b>체납자 지위 변동의 다양성 고려</b> : ① 사업장 부도로 인해 사업주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되는 경우 ② 사업주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자격 사이를 넘나들며 사업주 자격에서 발생한 고액체납자이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생계형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 등 다양</p> <p>※ <b>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자는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농어민의 경우 「농어촌복지법」에 근거, 전염병에 따른 가축 집단폐사, 농산물 가격폭락,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발생 시 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b></p> <p>⇒ 「국민건강보험법」에 '납부유예 등의 요건' 근거규정 신설</p> <hr/> <p>&lt;참고&gt;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p> <p>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b>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b> 다만, ~</p> <p>☞ 제15조 제1항 해당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li> <li>▶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li> <li>▶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li> <li>▶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li> </ul> | <p>'24.11월</p> |

| 구분                                       | 권익위 개선방안                                                                                                                                                                                                                                                                                                                                                                                                                                                                                                                                                                                                                                                                                                                                                                                                                                                                                                                             | 조치기한           |
|------------------------------------------|--------------------------------------------------------------------------------------------------------------------------------------------------------------------------------------------------------------------------------------------------------------------------------------------------------------------------------------------------------------------------------------------------------------------------------------------------------------------------------------------------------------------------------------------------------------------------------------------------------------------------------------------------------------------------------------------------------------------------------------------------------------------------------------------------------------------------------------------------------------------------------------------------------------------------------------|----------------|
| <p>⑤</p> <p>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유예' 근거규정 도입</p> | <p>□ (중장기)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처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p> <p>◦ 지역가입자가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처납처분 유예' 근거 규정 도입</p> <p>&lt;참고&gt;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 등의 요건)</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li> <li>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li> <li>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li> <li>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li> <li>5. ~ 6. 생략</li> </ol> <p>&lt;참고&gt;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p> <p>①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li> <li>2. ~ 6. 생략</li> <li>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 <p>중장기</p>     |
| <p>⑥</p> <p>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 대상 범위 확대</p> | <p>□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를 전체 미성년자로 확대</p> <p>◦ 현재의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의 요건을 폐지</p> <p>※ 아르바이트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거나 부모 모두 사망하였으나 상속받은 땅이 가치가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행방 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나 미성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p> <p>※ (참고)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면제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07.22.)</p> <p>⇒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개정</p> <p>&lt;현재&g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li> <li>▶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li> <li>▶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li> </ul>                                                                                                                                                                                                                                                                                                       | <p>'24.11월</p> |

| 구분                                                        | 권익위 개선방안                                                                                                                                                                                                                                                                                                                                                                                                                                                                                                                                                                                                                                                                                                                                                      | 조치기한           |
|-----------------------------------------------------------|---------------------------------------------------------------------------------------------------------------------------------------------------------------------------------------------------------------------------------------------------------------------------------------------------------------------------------------------------------------------------------------------------------------------------------------------------------------------------------------------------------------------------------------------------------------------------------------------------------------------------------------------------------------------------------------------------------------------------------------------------------------|----------------|
| <p>⑥</p> <p>지역가입자의<br/>‘연대납부 면제<br/>대상’ 범위 확대</p>         | <p>□ 【중장기】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확대</p> <p>◦ 한국이 ‘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을 ‘80세 이상’의 고령자 포함할 필요</p> <p>※ 국민건강보험 체납 채무로 인한 고령자(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여제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p> <p>◦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을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에 포함</p> <p>※ 장애인, 임산부 등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 규정 마련</p> <p>※ (참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연대납부의무를 면제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1.08.27.)</p> <p>⇒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신설</p>                                                                                                                                                                                                                                                                        | <p>중장기</p>     |
| <p>⑦</p> <p>납부의무자에<br/>대한 각종 중요<br/>정보 제공 다양<br/>성 강화</p> | <p>□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 중요정보 통지 강화</p> <p>◦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의 통지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p> <p>-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카카오톡(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p> <p>※ (참고) 현재, 체납처분 예정통보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안내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p> <p>⇒ 건강보험공단 내규 관련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 통지’ 신설</p> <p>□ 가입자의 중요정보 알권리 및 편의성 강화</p> <p>◦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의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세대원의 소득, 재산 관련 정보제공 등의 절차 마련</p> <p>- 소득항목의 ‘종합’란에 해당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을 명시</p> <p>- 재산항목의 ‘과표재산’란을 토지·주택·건축물 등으로 분류하여 명시</p> <p>◦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방문 신청 외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p> <p>※ 현재, 카카오톡 전자증명서의 경우 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만 가능</p> <p>⇒ 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부과관리업무처리지침」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의 확인서 서식 및 발급·확인 방법 등’ 개정</p> | <p>‘24.07월</p> |

| 구분                                               | 권익위 개선방안                                                                                                                                                                                                                                                                                                                                                                                             | 조치기한           |
|--------------------------------------------------|------------------------------------------------------------------------------------------------------------------------------------------------------------------------------------------------------------------------------------------------------------------------------------------------------------------------------------------------------------------------------------------------------|----------------|
| <p>납부의무자에<br/>대한 각종 중요<br/>정보 제공 다양<br/>성 강화</p> | <p>&lt;(예시) 보험사 청약서류 등 본인확인 이메일 발급화면(비밀번호 부여)&gt;</p>  <p>&lt;(예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화면&gt;</p>  <p>&lt;(예시)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신청란&gt;</p>  | <p>'24.07월</p> |



## 붙임 1

##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건강보험 관련 입법 동향

| 대표발의자                                  |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
|----------------------------------------|-----------------------------------------------------------------------------------------------------------------------------------------------------------------------------------------------------------------------------------------------------------------------------------------------------------------------------------------------------------------------------------------------------------------------------------------------------------------------------------------------------------------------------------------------------|
| 기동민의원 대표발의<br>15인<br>(발의, 2020.07.22.) | <p><b>【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b></p> <p>○ 제안이유 : 가족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미성년자에게도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p> <p>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b>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b>(안 제77조제2항 단서)</p> <p>○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 <u>다만,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u></p>                                                                                                                                                                   |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br>10인<br>(발의, 2020.11.27.) | <p><b>【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b></p> <p>○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섬·벽지·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b>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b></p> <p>최근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제1항제6호 신설)</p> <p>○ 제75조(보험료의 경감) ① 1. ~ 5. 생략<br/>6.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u><br/>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br/>나.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p>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br>10인<br>(발의, 2021.01.22.) | <p><b>【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b></p> <p>○ 제안이유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p> <p>이에 <b>이들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도 건강보험료의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b>하여,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6호)</p>                                                                                                                                                                                                                                                                            |



붙임 1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건강보험 관련 입법 동향 - 계속

| 대표발의자                                  |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
|----------------------------------------|----------------------------------------------------------------------------------------------------------------------------------------------------------------------------------------------------------------------------------------------------------------------------------------------------------------------------------------------------------------------------------------------------------------------------------------------|
| 고영민의원 대표발의<br>15인<br>(발의, 2021.06.17.) | <p><b>【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b></p> <p>○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p> <p>이에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81조).</p>                                                                                                                                                      |
| 최혜영의원 대표발의<br>10인<br>(발의, 2021.08.25.) | <p><b>【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b></p> <p>○ 제안이유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08조).</p>                                                                                                                             |
| 이종성의원 대표발의<br>10인<br>(발의, 2021.08.27.) | <p><b>【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b></p> <p>○ 제안이유 :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음.</p> <p>그런데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어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발생한 체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단서).</p> |
| 조명희의원 대표발의<br>13인<br>(발의, 2021.10.21.) | <p><b>【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b></p> <p>○ 제안이유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p>                                                                                                                                                                                                                                                                                 |

| 대표발의자                                            |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
|--------------------------------------------------|-------------------------------------------------------------------------------------------------------------------------------------------------------------------------------------------------------------------------------------------------------------------------------------------------------------------------------------------------------------------------------------------------------------------------------------------------------|
| 조명희의원 대표발의<br>13인<br>(발의, 2021.10.21.)<br><br>계속 | <p>그런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p> <p>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b>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b>(안 제81조의2제1항 단서).</p>                                                                                                                          |
| 강기윤의원 대표발의<br>10인<br>(발의, 2022.06.30.)           | <p><b>【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b></p> <p>○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아동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p> <p>이 경우 해당 아동은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굴하지 못하였거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점검이 필요함.</p> <p>이에 <b>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b>으로써,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7항 신설).</p> |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

□ 보건의료계

**【윤태호교수, 부산대 의대】**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운영할 필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필요

탈빈곤 정책으로 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기준 완화. 보험료 경감기준 중 하나인 연간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는 2007년 보험료 경감고시 제정할 때 기준으로 현실과 많이 동떨어짐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도입과 함께 국가기관에서 보험료 대납해 줄 필요.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참고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고 향후 체납자에게 청구하는 방안

-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자격변동 사항 등에 대해 직접 통화나 문자 전송을 통해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
- 급여제한 체납횟수를 현행 6회에서 9회,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48회로 완화하는 방안은 민원을 줄이는 일시적인 효과로 생각됨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징수율이 99.6%임을 고려할 때 고의나 의도적 체납자가 아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

**【김선박사, 건강정책연구센터장】**

- 고액 체납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를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움.

사업장 부도로 인해 사업주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된 경우 사업주와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자격을 넘나들며 사업주 자격에서 발생한 고액 체납자 이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생계형 체납을 반복하는 사례 빈발

-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체납관리제도는 체납자를 제재하고 처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통장압류와 급여제한이 대표적임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제재가 공공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게 함 (임신·출산비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등)

당사자(가입자)의 건강과 소득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건강, 소득보장 기능마저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 납부유예제도는 현재 직장가입자와 농어민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지역 가입자에게 확대할 필요

- 보험료와 체납보험료의 면제, 감면, 지원제도가 동반되어야 함

부모가 사망한 일부 미성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면제대상을 소득·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미성년자에게 확대해야 하고, 고령자와 임산부에게도 적용할 필요

체납보험료 면제는 결손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체납 보험료는 청산되지 않음)

-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민간보험은 납부 형편이 안될 경우 급여지급 중지조건으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은 형편이 안 되어도 계속 납부해야 하고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제한이 풀리지 않음

-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가 필요. 빈곤 인구나 수급자 인구의 간극 차가 큼. 의료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함

【김준현박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 권익위에서 제시한 개선과제 중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관행 개선'에 대한 압류 전 체납자의 소명기회 절차 강화와 체납자 독촉 고지 조항(우편물 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개정은 필요함. 또한 압류 해제 요건의 구체적 기준 마련도 필요
- 이 외에 건강보험 급여제한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완화하는 방식도 필요해 보이나 사회보장 취지에 맞게 급여제한 근거 규정 폐지가 바람직함
- 또한 체납자에 대해 당월보험료, 체납보험료, 연체료, 부당이득금(병원 이용시)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급여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음. 따라서 분할납부 횟수는 48회 수준으로 완화하되, 특정기간 이상 체납이 장기화할 경우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권익위에서 제시한 대안에 동의.  
 '생계 문제를 위해 근로를 해야 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연대납부 의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연대납부 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
-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  
 이전에 분할납부를 한 적이 있으면 현재 결손처분 신청대상이라도 납부 의사가 있음으로 간주하여 미승인하고 있음
-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 하더라도 체납 당시 세대원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결손처분 승인이 되지 않고 체납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
-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권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저보험료 폐지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금액을 완화'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

□ 사회복지계

**【정재훈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앞서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체납관리제도를 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형 복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

- 현재의 건보료 포괄 압류처분 방식은 헌법 정신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정신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횟수도 48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다만, 가족 구성원 중에 미성년, 특히 어린 자녀나 장애인 등 부양 부담에 따라 횟수 제한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음

-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 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체납 보험료를 공단 등에서 대여해 주고 추후 분할납부방식으로 돌려받는 방식도 취할 수 있음
- 체납자라고 낙인을 씌우기 보다는 대여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적절한 시기에 대여 보험료를 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

**【변금선박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권익위가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실제 건강보험료 체납과 납부 독촉으로 인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그동안 건보료 체납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본래 목적인 건강권 보장이 아닌 보험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온 측면 존재



건보료 체납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의도, 사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유형화하고 그에 맞는 체납 대응이 필요. 특히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 별도의 운용지침 마련하여야 함

건강보험료 체납업무 개선은 민원 해소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라는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적이 보험료 납부라는 부수적 요인으로 침해 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함

- 지자체 소득과약 행정시스템과 규정 미비로 인해 사실상 건보료 납부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납부대상으로 간주된 집단을 유형화하여 저소득 체납자의 건강보험 보장방안을 마련할 필요
-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 급여와 연계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함
- 건강보험 체납기록을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세부 정보로 적극 활용할 필요.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등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업무 지침 마련도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통보시기와 방식을 다양화하고 체납위기 상황에 관한 사전 신고제 운영 필요(폐업, 이직과 실직, 가족관계 단절 등)

#### □ 법조·언론계

##### 【박영아변호사, 공익법인 공감】

- 권익위가 제시한 개선 방안 중 일반체납자와 취약계층 체납자 현황 분리 관리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임
- 압류 등의 체납처분 업무관행 개선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제시된 대만의 사례처럼 건강보험료 체납상태를 탈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 보고서에서 언급한 분할납부는 기존의 보험료에다 분할납부액을 추가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가중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분할납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대만의 경우처럼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보고서에서 납부유예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납부유예 기간에도 보험급여는 보장되어야 함
-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류호기자, 한국일보 사회부】**

-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은 언급을 해 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 즉, 거시적인 담론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림
- 첫 번째 포인트는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어떨까?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가 있다면 그것부터 찾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주민 건강보험 논란, 최근의 실업급여 관련 논란, 국민연금 관련 세대 갈등론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사회보험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음

매번 나오는 문제가 특정 계층이나 어떤 당사자를 겨냥해서 무임승차론, 불공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보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됨

혜택이나 보장성 그리고 사회보험이 갖는 연대의 성격에 방점을 뒀야 할지 아니면 가입자들의 형평성에 방점을 뒀야 할지 사회적 담론이 필요

이런 논쟁이 반복될수록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결국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면서 제도가 한 발짝씩 나아가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

이제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으로서 연대 성격이 강하므로 우리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봄

- 두 번째 포인트는 국고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 지에 대한 담론 필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국고지원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음

취약계층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담론도 필요

-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나 경제적 구조가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논의방안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병·감염병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회의 환경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시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할지 모르는데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임

정 본 입 니 다 .

2023. 11. 8.

국 민 권 의 위 원

